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879-01

2019. 08.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 방안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력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8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연구위원
나 현 수 연구위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 방안

연구 담당

김정섭 |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나현수 | 자료 정리, 부록 집필

요 약

농정 영역에서도 사회통합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었다. 영농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에게 돌봄, 일자리, 직업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 주목을 받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시작되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 부문과 여타의 경제·사회 분야 행위자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에 기초할 때 확산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영농 활동 고유의 목적에 덧붙여 사회통합이라는 부가적인 목적을 지니는 다기능 농업의 일종이자 사회 혁신 실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넘나드는 연계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논의되는 다부문 간의 협력과 연계, 특히 정부 부처들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사회적 농업을 한국보다 앞서 활성화시킨 네덜란드, 이탈리아 국가들에서 사회적 농업 및 관련 정책이 어떤 경로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회보장사업들을 검토하여 현장에서의 다부문 연계와 협력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따져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중앙행정기관들이 협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안하였다.

네덜란드나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사회적 농업의 발전 과정을 준거로 할 때, 사회적 농업은 그 자체의 혁신적 성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호받으면서 확산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법제 등의 상위 수준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실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위 수준과 정책 및 법률이 작동하는 상위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적 적소 관리’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 같은 관점에서 도출한 제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농업이 실천되는 현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시행하는 기존의 사회보장사업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300여 개가 넘

는 사회보장사업을 중앙행정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46개 정도의 사업이 사회적 농업과 연계할 여지가 있는 대상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행위자들이 사회적 농업 실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거나, 사회적 농장이 사회보장사업의 특정 부분을 위임받아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보장 사업 관련 거버넌스에 농업인들이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계획에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들이 협력해 새로운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도 있다. 사회적 농업을 매개로 농촌 현장에서 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셋째, 농업이나 농촌과 관련된 법률과 보건복지, 평생교육 등 비농업 영역의 법률이 상당한 수준의 ‘계획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 같은 기성의 계획 제도 틀 안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권장하도록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농업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도 사회적 농업이 지니는 혼종적 특징과 사회 혁신이라는 가치 지향을 유지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기관들이 협의하고 참여해야 한다.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 목적 5
-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사회적 농업의 혼종성과 사회 혁신

- 1. 사회적 농업의 혼종성 7
- 2. 전환 연구 관점에서 본 사회적 농업의 의의 10
- 3. 시사점 19

제3장 사회적 농업 실천과 사회보장사업의 연계 가능성

- 1. 타 영역 정책과의 미시 수준 연계 필요성 23
- 2.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사업 검토:
 사회적 농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26

제4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구조 형성 전략

- 1. 기존 정책 사업 시행 현장에서 연계 및 협력 촉진 39
- 2. 중앙행정기관들의 협력에 기초한 시범사업 추진 41
- 3.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 정비 45

제5장 결론 51

부록

- 1. 사회적 농업과 연계 가능성 높은 사회보장사업의 개요 53
- 2.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법” 136

참고문헌 145

표 차례

제3장

- <표 3-1> 외국의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과 관련 법규 24
- <표 3-2> 중앙행정기관 사회보장사업과 사회적 농업의 연계가능성 ... 27

제4장

- <표 4-1>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 현장 수준
다부문 연계·협력의 형식 40
- <표 4-2> 사회적 농업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법정계획과 근거법 46

그림 차례

제2장

- <그림 2-1> 기술적 진화 및 제도 변화에 관한
다행위자, 다층위, 다측면 관점 11
- <그림 2-2> 경계를 넘어 발전하는
혁신 행위자들의 다층위 전략적 활동 17
- <그림 2-3> 네덜란드 돌봄 농업 부문의
주요 변화를 보여주는 다층위 틀 18

제3장

- <그림 3-1> 특수교육 대상자 수 33

제4장

- <그림 4-1> 사회적 농업의 세 가지 핵심 요소 42
- <그림 4-2>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개요 49

1. 연구의 배경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이 한국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 문제가 여러 차원에서 반영되어, 농업인과 농업이 기여하는 사회통합 실천으로서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을 촉진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¹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자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도시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농업의 성격을 띠는 실천과 정책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은 최근에야 참신한 실천으로서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농업 부문과 여타 경제·사회 분야 사이의 소통과 협력에 기초할 때 사회적 농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반복 제기되었다. 사회적 농업은 영농활동을 바탕으로 하지만, 농업인만이 전유(專有)하는 부문이라고 보는 관점은 적절하지

¹ 돌봄 농업(care farming), 청년 교육 농업, 노동통합(일자리) 농업, 기타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끌어안으려는 농업 실천을 촉진하는 정책사업으로서, 2018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2018년에 9개소, 2019년에 9개소 등 18개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 조직에 농장활동 기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실행 비용, 지역사회 내 협력 연결망(network) 형성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대상 지역마다 연간 6,000만 원을 지원하며, 최장 5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사업이 설계되어 있다.

않다. 하싱크(J. Hassink)는 사회적 농업을 두고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과 지역사회-기반 사회·보건 돌봄(community-based social/health care)이라는 두 개념 안에 위치한 혁신적인 접근방법”(Hassink, 2009: 21)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정섭 외(2017: 94)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사회적 농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 그렇게 본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농업 확산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다른 조건들이 충족될 때, 사회적 농업이 확산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필요조건에 관해서, 하싱크는 ‘농업, 돌봄 등 각각의 직능 영역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넘나들며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경계 확장자(boundary spanner)로서 인적 자원’, ‘협업을 위한 동기 유발’, ‘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내부로부터의 정당성 및 지지 확보’, ‘재정 지원’, ‘전문기관 내부의 개방적인 조직 문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Hassink, 2017). 디 이아코보는 ‘농촌발전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사회통합을 중요 의제로 설정하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행위자 간의 연결’, ‘부문(농업, 보건, 교육 등) 간에 새로운 집합적 지식(collective knowledge)과 혁신적 해법과 새로운 규칙을 창출할 수 있는 전환과정(process of transition)’ 등을 제시했다(Di Iacovo 외, 2014). 두 선행 연구에서 공통되게 강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분야 간에 ‘새로운 관계 맺기, 소통과 협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특히, 유럽연합의 정책 문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용어로서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 사회적 농업과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한국의 사회적 농업 정책이 어떤 부분을 지향해야 할지를 잘 드러낸다. …… 새로운 관계, 즉 농촌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실천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농업 생산단위가, 특히 개별 농가가 일상적으로 생산하던 농업 생산물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사회적 농업을 이해한다면 왜곡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농식품부가 사회적 농업 정책을 전개한다면, 그 위상은 농외소득 증진 정책이 아니라 농촌 정책이라는 바탕 위에 놓여야 한다. 혹은, 사회복지 정책의 다양한 메뉴들 가운데 하나로 추가되는 메뉴이지만 해서도 안 된다.”(김정섭 외, 2017: 94).

한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도 부문별·직능별 행위자(기관, 단체, 개인 등) 간의 연계와 협력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의 중요한 조건임이 확인된다. 장애인 돌봄 농업 사례로 알려진 충남 홍성군의 행복농장은 수년 전부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의 농업인들이 협력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근년에는 홍성군 보건소 및 도시 지역의 정신건강 분야 돌봄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기획·실행·평가, 비용 확보, 홍보 등의 여러 측면에서 그 같은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확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기획될 때, 행복농장의 그 같은 경험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지원 사업 첫해에 사업 대상지 농업인 등 관련자들에게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협력 네트워크를 잘 형성한 곳일수록 사회적 농업 실천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충청북도 보은군의 성원농장은 보은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전라북도 무주군의 ‘농업회사법인 팜앤씨티’는 무주 종합사회복지관,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단, 무주군 소재 지역아동센터 여러 곳, 국립 인터넷드림학교,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력 연결망을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 임실군의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도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익법인들과 전라북도지방법원이 후원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협력 관계를 맺어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사회적 경제 부문 조직들의 연합 조직인 ‘사회적 협동조합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농업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인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이랑’,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고 있다.

한 해 뒤인 2019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곳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부문 간의 지역 수준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금곡영농조합법인은 인근 지역의 장애인 돌봄 기관들과 협력해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사회적 기업 ‘콩세알’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과 농업인이 협력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과는 관계없이 농업인들과 비농업 부문 직능 기관이 협력해 사회적 농업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례도 등장했다. 농촌체험관광 분야 활동을 수행하는 농가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홍성도농교류센터와 홍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경증 치매 노인들이 참여하는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8회기 정도 진행하였다.

농촌 현장에서 협력과 연계의 노력이 확산될수록, 상위 수준(각 급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서 법제 및 정책 측면의 협력 필요성도 커진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탈시설’을 중시하는데, 농촌에서는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려는 이들에게 사회적 농장이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법률과 정책사업 두 측면 모두에서 농업 및 보건복지 부문 사이에 연계나 협력에 관한 논의는 그다지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도 교육 및 노동 관련 정부 부처와 농림축산식품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미흡하다.

각 부문의 기관들, 특히 정부 부처는 저마다 관련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데, 일종의 ‘칸막이 구조’ 안에 ‘경계선’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농업 실천 집단이나 수혜자 집단 들에게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듯하다. 가령,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사회적 농장의 종사자나 영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혜자에게 인건비 성격의 급여를 제공하는 일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장’ 관련 정책, 고용노동부의 각종 일자리 정책은 인건비 성격의 급여를 허용한다. 그런데 지원 조건이나 자격이 ‘농장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의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아, 현장의 행위자들이 접근해 활용하기가 아주 어렵다. 또 다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 급여를 들 수 있다. 농촌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 다수가 수행하는 ‘영농사업단’ 등의 자활근로사업은 그 취지와 내용이 사회적 농업 개념과 일치하는데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에서는 ‘중복 지원’ 또는 ‘업무 분장의 불명확’ 등을 우려해 협력을 거부하거나 망설인다. 그밖에도 각 직능 영역의 주요 행위자

들이 ‘전문성’ 문제를 들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에 미온적인 관행도 적지 않다.

사회적 농업 실천의 특징 중 하나인 사회 혁신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나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고(과정 측면), 그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결과 측면)을 말한다. 종래의 시장이나 기성 제도에서는 해결되지 않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사회 안의 취약한 집단에 관심을 두는 것”(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ers, 2011: 43)이라고 정의된다. 사회적 농업 실천이 그 같은 사회 혁신의 실례로서 정착되려면, 다층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같은 노력 가운데 중앙정부 수준의 법제와 정책에서 협력 및 연계의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는 일을 빼놓을 수 없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논의되는 여러 조건 중에서도 서로 다른 부문 간의 협력과 연계에 기초한 사회 혁신을 가능케 하는 정부 부처 간 협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목표를 정했다.

첫째, 관련 이론과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 등 한국보다 먼저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된 국가들의 사회적 농업 발전 과정을 논의한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어떤 사회적·제도적 조건에서 사회적 농업을 둘러싼 이종(異種) 부문 간 협력이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회보장사업을 검토하여, 사회적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실천과 연계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논의한다.

셋째, 사회적 농업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부처 간 협업 방안을 제시한다.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보고서의 2장에서는 외국의 사회적 농업 발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종 부문 간 협력 구조의 형성 과정에 관해 문헌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술 문헌으로는 사회 혁신, 전환 연구(transition studies) 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정부 부처 간 협업 방안을 중앙정부 수준에서 마련해 하향식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농촌 현장에서 행위자들의 협력을 보장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실천 층위와 그런 실천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제도 층위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방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사회 혁신과 거시적인 사회 변동을 논의한 ‘전환 연구’ 담론을 살펴보았다. 이는 연구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이다. 한편,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농업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 행위자들의 협력 연결망이 어떤 제도 및 정책 여건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사회적 농업 확산에 도움이 될 만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 정책 사업의 지침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결합되거나 공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때 시너지(synergy)를 창출할 만한 정책 사업을 찾기 위한 작업이다. 보건복지부의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나오는 중앙 정부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에 제시된 정책 사업을 검토하였다. 이 목록에는 총 311개의 사회보장사업이 열거되어 있다.

4장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관장하는 제도 및 정책 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을 촉진할 협업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2장과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개략적이거나 ‘정부 부처 협업형 시범사업’ 몇 가지와 여러 가지 법정 계획 수준에서의 협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1. 사회적 농업의 혼종성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가’라는 논의는 이제야 시작될 기미를 보인다. 대체로 사회적 농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쟁점이 제기된다. 가령, 도시농업 운동은 시민사회에 농업의 가치를 알리자는 취지의 활동인데 도시농업 실천도 사회적 농업의 개념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가, 로컬푸드 운동도 시민사회를 향한 농업 부문의 메시지 전달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것도 사회적 농업의 일종 아닌가, 등등의 질문이 제기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개별 농가가 아닌 집합적 단위(법인,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단체의 연합체)이면서 반드시 농업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자가 핵심에 있어야 하며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준비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앞의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사회적 농업 개념의 범위’와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려는 보조금 정책 사업의 대상 범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현실적 관점, 사회적 농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구성주의 관점(constructivist perspective)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논의를 계속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일찍 실천이 확산되고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정비하고 확충해 온 유럽연합(EU) 및 회원국에서는 일정한 합의가 형성된 듯하다.

사회적 농업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 동의되는 핵심 내용이 둘 있다. 첫째, 사회적 농업은 기본적으로 영농 활동에 바탕을 둔다. 둘째, 혼종성(hybridity)이야말로 사회적 농업의 중요한 특징이다.

사회적 농업이 영농 활동에 바탕을 둔다는 관점은, 장소만 농장이라는 점이 다를 뿐 사회복지 기관이나 직능 단체가 수행하는 수많은 형태의 실천 가운데 일종일 것이라는 개념 부여를 거부한다. 즉, 사회적 농업 실천의 기본 주체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정의하는 열쇳말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다기능 농업’이라는 용어다.

가령, 하싱크는 사회적 농업의 한 갈래인 돌봄 농업의 출현을 다기능 농업³의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설명한다(Hassink, 2017: 25-26). 그밖에도 사회적 농업이 다기능 농업의 관점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룬다(Di Iacovo and O'Connor, 2009: 21; 김정섭 외, 2017: 2).

돌봄 농업은 서로 다른 두 영역, 즉 농업 영역과 보건 돌봄 영역을 연결하는 과제에 도전하는 다기능 농업의 흥미로운 사례다. 전(前) 산업사회에서 농업과 보건 돌봄은 작은 크기의 지역공동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부문은 현대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각기 분리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 농업 부문은 보건 돌봄 및 사회 서비스를 다양한 환자 집단에게 제공하는 일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DiIacovo and O'Connor, 2009). 게다가 보건 돌봄 분야 전문가나 조직이 정신질환자, 지적 장애인, 노인, 아동, 약물 중독자, 장기 실업자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농업인이 제공케 하는 접근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돌봄 농업이 예전에는 과학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던 다기능 농업의 한 사례가 되기에 이르렀다. 돌봄 농장은 농업 생산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결합한다.

- Hassink(2017:25-26).

사회적 농업의 핵심 실천 주체는 농업인이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은 혼종성을 갖는 다기능 농업이다. 즉, 농업 생산단위가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³ 이 연구에서 다기능 농업의 개념, 사례, 의미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다. 다기능 농업의 개념, 등장 배경 등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로는 Durand & van Huylbroek(2003), Wilson(2007), Renting et al.(2009), Ploeg(2018) 등을 참고.

동시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가능성, 즉 농장이 농장이면서 돌봄의 장소가 되거나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드러낸다(김정섭, 2018).⁴ 그런데 농업인만의 행위로 그런 ‘-되기’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농업은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 연결망에 배태된 실천이다.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 사회·보건 돌봄이라는 두 개념에 기초한다. 이는 농촌의 전통적인 자조 연결망(self-help network)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local)의 복지 체계에 속한 비공식적 사회 연결망과 농업 자원에 바탕을 둔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

- DiIacovo & O’Connor(2009: 12).

여기서 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키면, 사회적 농업의 특이성은 사회 혁신의 잠재력으로 환원된다. 사회 혁신은 논란의 씨앗을 품은 개념이지만, 사회적 농업 정책의 기원을 이루는 유럽의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나 협력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발상(제품, 서비스, 모델)을 사회 혁신이라고 정의한다. 사회 혁신은 사회에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행동 능력을 강화하는 혁신이다.”(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ers, 2011). 그리고 농촌의 사회 혁신에는 문제가 되는 장소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네트워킹과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Bock, 2016: 569). 이렇게 보면 사회적 농업이야말로 농업 영역과 여타의 영역(고용, 복지, 교육 등)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전형적인 사회 혁신 실천이라 할 수 있다.

4 사회적 농업의 이 같은 특이성을 설명하려고 ‘탈영토화’ 개념을 빌려 충남 홍성군 장곡면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 김정섭(2018)을 참고.

2. 전환 연구 관점에서 본 사회적 농업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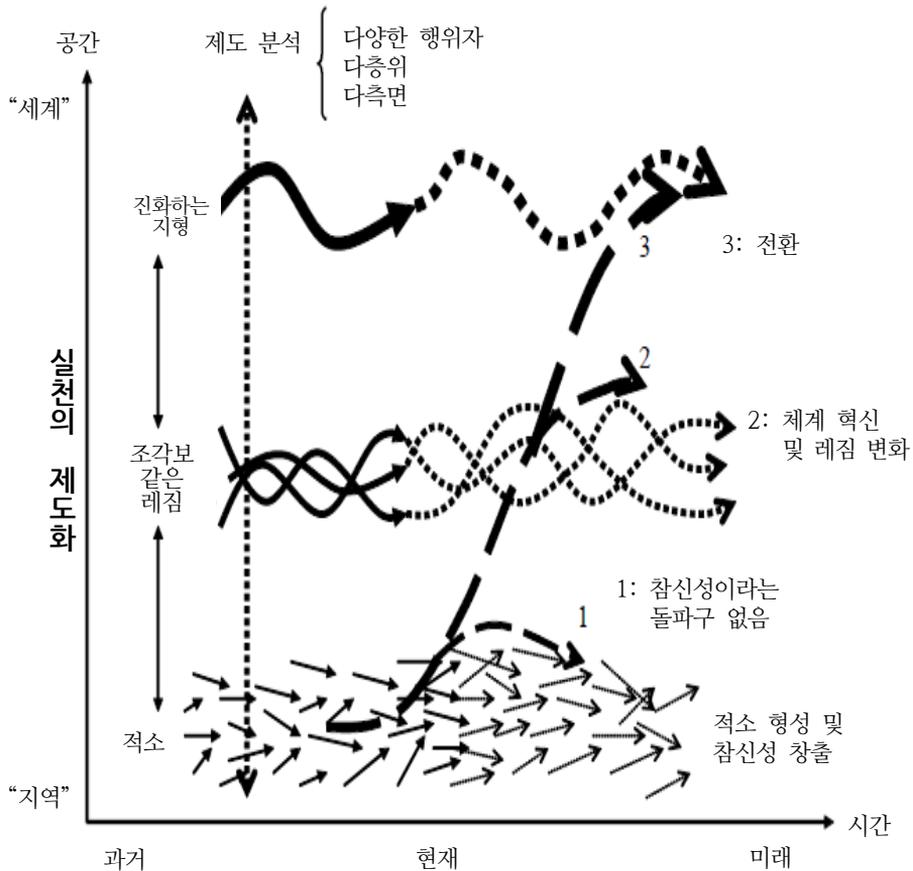
사회 혁신 논의는 농촌 발전 문제에서 그 동안 덜 인지되었던 사회적 측면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을 사회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까닭은, 사회적 농업이 ‘경계를 넘나드는’ 실천이기 때문이지만, 전환 연구(transition studies)의 관점에서 볼 때 제도 및 사회의 변동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환 연구에서는 범사회적 변동을 다층위 관점(multi-level perspective)에서 연구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전환이란 사회 체계의 구조, 문화, 실천 등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정의되는데(Rotmans and Loorbach, 2008), 여러 층위에 존재하는 과정, 활동, 사건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간주한다(Hassink, 2017: 32). 전환 연구는 이 같은 층위를 적소(niche), 레짐(regime), 지형(landscape)의 세 종류로 구분한다(Gells and Schot, 2007).

적소들은 미시적 층위를 형성하는데, 이 곳에서 급격한 참신성(novelties)이 등장하며, 적소에서는 그렇게 등장한 참신성이 주류(mainstream) 시장의 선택 메커니즘으로부터 보호된다(Schot, 1998). 혁신적인 행위자들이, 이들은 특정 영역의 주변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소 층위에서의 혁신을 수행한다(Geels and Schot, 2007). 레짐이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규칙, 자원, 일이 이루어지는 정해진 루틴(routines)을 말한다. 구조(제도적 환경), 문화(지배적인 관점), 실천(규칙, 루틴, 습관) 등이 뭉쳐진 혼합체이다. 레짐이 지니는 인지적, 규범적, 규제적 제도가 작동하여 사회 체계의 안정성과 결속을 확립하지만, 혁신이 국지화되거나 점진적인 개선으로만 귀결되도록 제약하기도 한다(Geels, 2005). 사회-기술적(socio-technical) 지형은 적소 및 레짐 층위의 행위자들이 발휘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넘어서는 외생적 환경을 형성한다(거시경제, 심층적 문화 패턴, 거시 수준의 정치 발전). 지형 층위의 변동은 대개 천천히 일어난다.

- Hassink(2017: 32-33).

그림 2-1. 기술적 진화 및 제도 변화에 관한 다행위자, 다층위, 다측면 관점



출처: Roep, D. and Wiskerke, J.S.C.(2004). "Reflecting on Novelty Production and Nich Management in Agriculture", in J.S.C. Wiskerke & J.D. van der Ploeg(eds.), *Seeds of Transition*, Assen: Royal Van Gorcum, 2004, p.352.

전환 연구의 틀을 따르자면, 혁신 또는 참신성(novelty)은 상당 기간 적소에 머물다가 특정한 계기에서 상층위의 레짐 변화와 맞물려 확산된다. 물론, 확산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혁신도 많다. 그래서 혁신이나 참신성의 씨앗이 뿌려진 그 상태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그것을 두고 전략적 적소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라고 개념화하였다

(Roep and Wiskerke, 2004).

사회적 농업 실천은 특정한 농촌 지역에서 농업 및 여타 분야(보건, 복지, 교육, 노동 등) 행위자들이 만나는 가운데 작은 규모로 그리고 자생적으로 시작된다. 그 혼종적 특징 때문에 사회적 농업은 단기간 내에 쉽게 확산되기 어렵다. 농업 부문에서도 그리고 보건복지 등 비농업 부문에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적 농업이 상당히 확산되었고, 농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등 비농업 부문의 제도나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농업의 발전 과정은 공히 전략적 적소 관리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 발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사회적 농업은 서로 다른 영역들(농업, 사회, 보건, 교육, 노동 등) 사이에서 실천된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의 진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담론과 혁신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다. 사회적 농업은 다양한 복지 시스템 그리고 복지 서비스에 관해 책임을 지는 공공 부문과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유럽에는 두 종류의 사회적 농업 모델이 있다고들 말한다(Di Iacovo *et al.*, 2014: 329). 하나는 ‘북유럽형 전문화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지중해형 공동체주의 모델’이다. 가령, 네덜란드의 돌봄 농업은 ‘북유럽형 전문화 모델’의 범주에 들고,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지중해형 공동체주의 모델’이라 말할 수 있다.

‘북유럽형 전문화 모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 체계의 틀 안에서 구성된 것으로, 시장/국가라는 분법의 틀 안에서 발전했다. 공공 서비스 부문이 민간 부문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농업 경영 다각화(farm diversification)라는 발상에 입각해서 규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렇게 인정 받으려면 농장이 특정한 기준(standards)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화된 시설, 인적 자원, 사회 서비스 관련 기술(skill) 등을 지녀야 한다. 농업인은 여전히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에 의존적이게 된다. 공공 부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적 농업은 돌봄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가령, 자연 생태계의 순환주거나 새로운

생활환경 등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중해형 공동체주의 모델’은 가족,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생활을 뒷받침하는 일상생활의 핵심적 경제활동 영역의 뒷받침 여부에 영향을 받는 복지 체계의 틀 안에서 구성된다. 복지국가(welfare state)가 계속 위축되면서, 일부 농업인들이 이윤 논리를 떠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재 공급에 나서게 되었다. 농업인들이 보건 부문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수혜자들이 그 대가를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특히 무언가를 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거나 통상적인 생산과정에 끌어들이는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을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농업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지역 주민이나 소비자 들과 직접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한 먹거리를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고 존재감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2.1.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⁵

유럽에서 사회 및 보건 정책은 유럽연합 회원국 각자의 책임으로 간주되었고, 경제 혹은 환경 문제에 비해 사회적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기울였던 농촌발전 정책은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서도 농촌 지역 사회의 사회적 안정성(social stability)이 긴급하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고령화, 세대교체의 난항, 고립, 농경지 면적 감소, 외국인 이주에 따른 사회 불안 문제의 출현 등으로 인해 농촌 발전 정책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Di Iacovo, 2013). 이와 동시에 유럽에서는 이른바 ‘복지 모델’(welfare model)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서, 농촌발

⁵ 이 소절의 내용은 Di Iacovo *et al.*(2014)이 전략적 적소 관리라는 관점에서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한 시사점을 요약한 것이다.

전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탈리아에서 그런 논쟁의 초점은 단지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었던 게 아니라, ‘기존의 국가/시장이라는 분법(分法)을 넘어선 법제 모델을 어떻게 재설계하고, 보충성(subsidiarity)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나 지역의 사업체를 어떻게 직접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제도 틀 안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 확산 과정에서 레짐의 변화를 달성했다.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 농업 실천의 혁신을 촉발했다. 기존의 지배적 사회-기술 체계가 제약하는 부분이 있지만, 영농 스타일(farming styles)의 다양성은 강력하게 남아 있고 대안적인 해법에 열린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고립된 개별 혁신가의 실천은 새로운 시각에서 고려되기 전까지는 그저 배경에 그치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런데 복지국가 위기 상태로 이어지는 지형 변화가 진행되고 새로운 수요가 출현하는 국면에서, 기존의 실천을 재독해하고 적절하게 코드화하면, 개별 혁신가의 실천은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농업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활동 방식과 새로운 의미를 계속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규정하고 촉진하는 사회-제도적 변화였다.

둘째, 지방(local) 수준에서 사회적 농업은 집합적 지식을 공유하며, 의미를 공유하고, 비전(vision)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농업, 사회보장, 교육 등 아주 다른 영역들로부터 출발한 행위자들이 기존 실천을 성찰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가운데 의미와 원칙을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사업체, 공공 서비스, 제3섹터, 정부 등이 협력하는 공동생산의 조직 모델을 구성하고 검증할 수 있었다. 새로운 지식을 정리하고, 책임과 공유 가치를 점진적으로 정식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기에 직면한 이탈리아 농촌에서 관계자들의 위기 대응 방식을 바꾸는 세 가지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시민 경제(civil-economy)’, ‘사회 정의’, ‘공동생산’이었다.

셋째, 사회적 농업이라는 무대는 선구자들이 초기 연합체를 형성하는 장소로 기능했다. 사회적 농업 영역이 조직되는 과정은 혁신적 해법의 기본

원칙과 변화의 필요성을 당사자들이 널리 수용하는 공식화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 과정을 주도한 초기의 선구자들은 기성의 레짐에 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가령,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개인, 기성의 레짐에 상대적으로 덜 관여하는 농업인 단체, 비정부단체(NGOs)나 공공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등이었다. 이러한 초기 연합은 점차 신규 참여자들에게도 개방되면서 확장되었다. 선구자들과 신규 참여자들의 연합은 더욱 긴밀해졌고, 그 결과 기존 레짐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도 사회적 농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농촌의 전환 과정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서로 다른 분야 행위자들 사이에 연합을 형성하고 상이한 관점들 사이에서 중재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환 경로를 밟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넷째, 혁신의 핵심 원칙을 두고 협상하고 타결하는 데 성공한 것이 중요했다. 사회적 농업에서 드러나는 혁신이 지니는 핵심 측면은 특정한 구조, 활동 과정, 활동의 비전 등을 극복했다는 점에 있다. 가령, 농업 및 사회/보건 분야에서 부문별 전문화 과정을 이탈해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 사이에 공동생산을 하게 된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적 합리주의에서 지방 수준의 연결망 관계로 이동함으로써 책임, 신뢰, 호혜 등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쏠을 갖추게 된 것도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동학(dynamics)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사회적 농업은 개별 농업 경영체 수준의 혁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개인의 가치 및 신념 측면에서 여러 수준에 걸쳐 형성된 지식, 전망, 접근방법, 조직 구조, 권력 관계 등의 변화를 수반하는 혁신이기 때문이다. 즉, 협상해야 할 갈등 혹은 충돌 지점이 다차원적으로 존재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농업인의 합리적 선택 영역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이윤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시민 경제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 측면 선택지(가령, 관행적인 치료 실천이 지니는 과학적 합리성을 따를 것인가,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할 것인가), 정치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정책 영역(가령, 농업, 사회, 보건, 교육 등) 간의 구분을 유지할 것인가 없앨 것인가 등의 지점이 존재한다.

2.2.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⁶

네덜란드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농업 유형인 돌봄 농업은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 활동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결합한 혁신적 실천 사례로 인지된다. 돌봄 고객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농업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돌봄 농업이 네덜란드에서 크게 확산되었다. 네덜란드에서 1998년에는 75개였던 돌봄 농장이 2014년에는 1,100개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Hassink, 2017: 275). 현재 네덜란드에서 돌봄 농장들은 다기능 농업 및 돌봄 사회화(societization of care)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빠른 확산은 놀라운 일이다. 돌봄 농업이 네덜란드에서 급격히 확산된 배경에는 농업 부문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부문이 처한 거시적인 조건들이 작동했다. 게다가 네덜란드에서 돌봄 농업은 광범위한 지원 정책 구조와 더불어 발전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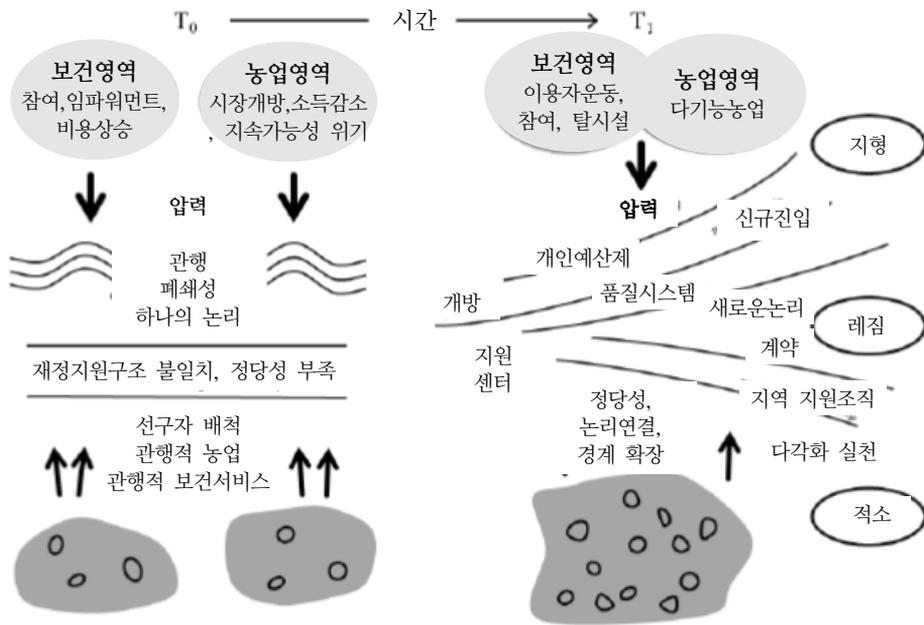
그럼에도 이탈리아처럼 네덜란드에서도 돌봄 농업의 초기 실천은 부문 간(inter-sectoral) 협력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힘겨운 난제였다. 초창기 돌봄 농업을 실천하려 했던 농업인은 돌봄 부문의 입장에서 보면 신참자에 불과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그리고 보건 돌봄 부문의 재정지원 구조에는 들어맞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는 혁신자였다. 즉, 네덜란드에서 돌봄 농업이라는 새로운 부문이 정립되기까지 직면했던 여러 도전들 중 가장 큰 것은 농업과 보건 복지라는 서로 다른 두 세상을 연결하는 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 전문적 직능 조직을 갖추는 일, 돌봄 농업 서비스 관련 재정 구조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일 등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농업이 부문 간 경계선을 넘나드는 전형적

⁶ 이 소절의 내용은 하싱크(Hassink, 2017)가 네덜란드의 돌봄 농업이 하나의 부문(sector)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확산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인 사회 혁신의 실천이라는 점이 네덜란드 들봄 농업의 확산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전환 연구의 논리를 따르자면, 적소 수준의 혁신인 사회적 농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된다면 레짐 수준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요청되는 국면에 도달할 수 있다. 네덜란드 들봄 농업 발전 과정이 바로 그런 경로를 밟았다.

그림 2-2. 경계를 넘어 발전하는 혁신 행위자들의 다층위 전략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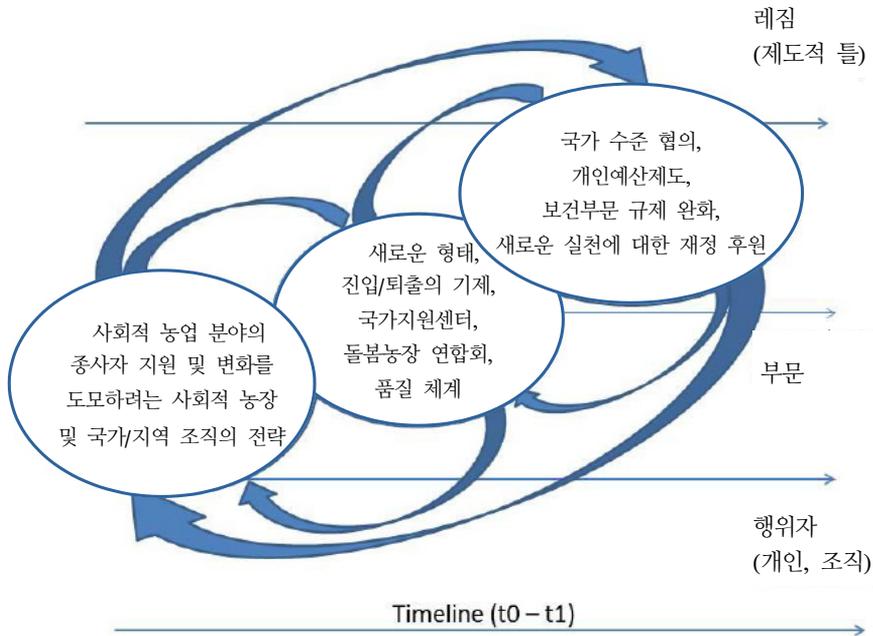
자료: Hassink(2017: 236).

하싱크(Hassink, 2017: 235-236)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 확산을 계기로 체계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변화가 직면한 도전은 ‘부문 간 분리’⁷, ‘법적 정당성 부족’, ‘배태성(embeddedness) 부족’, ‘서로 다른 논리들에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 등이었다<그림 2-2>. 이들 도

⁷ 흔히들 정부 부처 사이의 ‘칸막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

전을 극복하는 데에는 이중적 정체성을 활용하는 행위자, 기업가적 행동과 제도적 행동을 결합하는 행위자, 서로 일치하는 논리를 지닌 행위자들과 스스로를 연결하는 행위자가 아주 중요했고, 그 결과 그림 2-3에 보인 제도적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Hassink, 2017: 236).

그림 2-3. 네덜란드 돌봄농업 분야의 주요 변화를 보여주는 다층위 틀



자료: Hassink(2017: 50).

네덜란드의 경우는 어느 한 정책 영역에서 포괄할 수 없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현상을 통합적으로 다룰 제도가 등장하기까지 다층위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경험을 근거로 제도의 층위에서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틀을 형성한다면 사회적 농업 실천이 사회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도 있고, 거꾸로 제도는 다층위의 노력이 이루어진 결과라

는 가설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제도 정비가 원인이든 결과이든, 분명한 것은 사회적 농업 실천이 확산되면 농업 정책이나 보건복지 정책이나 고용 정책이나 어느 한 부문에서만 조절하기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시사점

사회적 농업 관련 제도가 두터운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의 경험을 참고하면 한국에서는 다소 틈을 들여 현장에서의 실험과 협력의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기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민간 및 공공 부문 양 측에서 주도할 수 있는데, 우선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시범사업’ 형태의 정책 사업으로 시도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 부문과 여타 부문 사이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허무는 실천들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법규나 정책 사업 등 레짐 수준에서 확인되는 변화의 필요조건을 식별해야 할 테다. 그 후에 상위 법규 또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 수준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은 모두 이 같은 과정, 즉 적소에서 혁신과 레짐의 변화가 되먹임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 1980년대이고, 낮은 층위에서부터 제도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 1990년대 중반이고, 1990년대 말부터는 노인돌봄 등의 분야에서 공공재정 지출 제도의 큰 변화가 생겨나면서 사회적 농업이 급격히 확산되었다(Fazzi, 2011: 121). 그러다가 2015년에 들어서야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이 1,000개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국가 수준의 “사회적 농업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네덜란드에서 돌봄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2000년대 초반에는 공공 부문의 지원이 증가했고, 사회적 농장들 사이에 연결망이 형성되었다(김정섭 외, 2017:

31). 가령, 네덜란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국립 농업 및 돌봄 지원센터 (the Dutch National Support Centre for Agriculture and Care)’가 설립되어 농가들이 돌봄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조력하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고, 뒤이어 개인예산제⁸(personal budgets) 도입 등 보건복지 영역 제도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사회적 농장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보건복지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돌봄농장 수가 급증해 현재 네덜란드 전역에 1400여 개의 돌봄농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덜란드에는 국가 수준의 사회적 농업 관련 법률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법제 정비 수준이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 농업 부문과 연계될 수 있는 영역들을 식별하고,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서비스 제공 실태를 미시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여타 부문의 결합이 ‘작은 혁신’ 사례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런 혁신 사례들이 누적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레짐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농업과 결합되어 사회적 농업 실천을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은 보건, 복지, 교육, 일자리 등의 영역일 듯하다. 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는 자활, 커뮤니티 케어,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의 세부 영역이 중요해 보인다. 자활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사회적 농업 실천이 작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시범사업 실행 단계로 진입했는데,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결합된다면 상당히 확장될 잠재력을 지닌다. 교육 분야에서는 근년에 강력한 힘을 얻어 추진되는

⁸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체계를 바꾸려고 검토되고 일부 국가들에서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개인예산제도이다. 개인예산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가 있는데, 이 두 제도는 수급자의 서비스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직접지불제도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장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며,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총량을 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서비스 예산을 확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승기, 2016: 141).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 특수교육 정책이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타 영역 정책과의 미시 수준 연계 필요성

사회적 농업 실천의 핵심 행위자인 농업인(사회적 농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 부문의 사회적 농업 확산 정책 수단은 크게 두 범주로 구별된다. 첫째는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르는 비용 보전 내지는 대가 지불 성격의 지원 정책이다(보상). 둘째는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이다(촉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외국의 사회적 농업 정책 수단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첫 번째 경우, 즉 ‘대가 및 비용 지불’ 성격의 정책 수단을 법률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사회적 농장)가 농업 생산 활동과 결부된 형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추구할 때, 동일 조건의 농업 생산단위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돌봄, 교육, 일자리 제공 등 현재 알려진 주요 사회적 농업 형태에서 공히 그런 경향이 있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그만큼이 바로 사회적 농장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서비스에 대한 대가 또는 서비스 공급 비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사회적 농업 실천의 지속성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에 따라서, 국가별 법제 환경에 따라서 그 같은 대가 또는 비용 지불 메커니즘은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물론, 사회적 농업 실천이 초기 단계인 국가에서는 그 같은 보상 메커니즘이 미흡한 경우도 많다.

표 3-1. 외국의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과 관련 법규

구분	관련 법규	주요 정책 수단		주요 재원
		내용	분류	
이탈리아	- 사회적협동조합법 (1991) - 사회적농업법 (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보상	사회보험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수당 지급	보상	
		고용취약계층의 임금 보조	보상	
		교육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보상	
		직업교육 참여수당 및 교육 운영비 지원	보상	EU 사회기금
		국유지 사용 우선권	촉진	-
		공공조달 및 공공일자리 선정 우선권	촉진	-
		사회적 농업 관찰국(observatory) 운영	촉진	국가
네덜란드	- 장기요양법(2014) - 사회지원법(2014) - 청소년·아동법(2014)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보상	개인예산제
		돌봄농업지원센터 운영 ¹⁾ (1999~2008)	촉진	농업부, 보건복지부
벨기에	- 현금 급여 지급 관련 법령 제정 (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보상	사회보험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 지급	보상	농업부
		시설정비 비용 지원	촉진	
		플란더스녹색돌봄지원센터 운영(2004~)	촉진	5개 주 정부
일본	- 장애인자립지원법 (2006) - 빈곤생활자 자립지원법 (2015)	시설정비 비용 지원	촉진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인력기술 지원	촉진	
		장애인 직업교육 운영 예산 지원	보상	
		공공 직업소개소(헬로워크) 운영	촉진	후생노동성
		고령자대상 사회적 농장 설립 지원	촉진	
빈곤계층대상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보상			

주1: 2009년부터는 정부가 직접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던 '네덜란드 국립 농업 및 돌봄 지원센터'를 해산하고, 그 기능을 돌봄농업 협의회 단체에 이관했다.

자료: 김정섭 외(2017: 40)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두 번째 경우, 즉 ‘사회적 농업 촉진을 위한 지원’ 성격의 정책 수단은 특정 실천을 장려하려는 국가 및 지방정부 수준의 타 분야 법제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과 유사하다. 인적·물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련 주체들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판촉을 돕거나 거버넌스 및 협력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간접 지원하는 수단들이 있다.

어느 범주의 정책 수단이든 법률에 명기할 때에는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한다. ‘대가 및 비용 지불’ 성격의 지원을 법률에 의거해 실행하는 제도를 만들 때에는, 그 기준이 얼마나 배타적인 선별 기준인가,⁹ 그리고 특정 역량을 지닌 인적 주체에 대한 인정(recognition) 형식으로서 ‘자격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모든 지원 수단을 제도화할 때에는 유사한 성격의 제도와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제처리하는 등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 같은 중복성 검토 및 조율이 필요한 법률이 적지 않다.¹⁰

그런데 한국 농촌의 상황에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조율하는 작업, 즉 레짐 수준의 변경보다 미시 수준의 연계와 협력 실천이 더 필요하다.

9 예컨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인증(certification) 제도는 배타성이 강한 인정 형식이다.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증을 받아야 각종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동시에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에 비해 네덜란드의 돌봄농장은 인증 제도가 아니라 지정(accreditation) 제도에 따라 규율되는데, 지정을 받아야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를 공공 부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정’이 돌봄농장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형식은 아니다.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고용정책 기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협동조합기본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보장 기본법” 등 검토해야 할 법률이 많다. 게다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실현법”, “공공조달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 등도 조율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사회적 농업 실천이 그다지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개정과 같은 높은 층위의 제도 변화를 당장에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둘째, ‘보상’ 범주의 사회적 농업 정책 수단이 미비한 것이 사회적 농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데, 현재의 보조금 사업¹¹으로는 사회적 농장의 비용 증가분을 보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사회적 농장이 보건, 복지, 교육, 일자리 등의 여러 정책 영역에서 실행되는 정책 사업에 참여해 부분적으로라도 비용을 보전하거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¹² 셋째, 사회적 농업 실천 경험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돌봄 농업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직능 분야 종사자들이 함께 실천하면서 ‘집합적 지식(collective knowledge)’을 창출해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사업 검토: 사회적 농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앞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의 행위자들이 미시 수준에서 여타의 정책 사업들에 참여하거나 타 부문 직능 종사자들과의 협력을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을 검토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중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에 제시된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지침에는 총 311개의 사회보장사업이 열거되어 있다. 그 가운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과 협력하여 시행할 여지가

¹¹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말한다.

¹² 하싱크(Hassink, 2017)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도 농업부와 보건복지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전인 1990년대 사회적 농업 확산 초기에는 사회적 농장들이 돌봄 기관의 하도급계약자(sub-contractor)가 되어 돌봄 서비스의 일부분을 수탁해 진행하고 대가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있다고 판단되는 46개의 사회보장사업을 사회적 농업과의 연계 가 능성이 라는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표 3-2>.13

표 3-2. 중앙행정기관 사회보장사업과 사회적 농업의 연계 가능성

연번	부처	사업명	연계 및 협력의 형식				중앙부처 간 협의 필요성과 내용	
			프로 그램 공동 기획	서비스 수탁	거버 넌스 참여	지자체 수준 계획 참여	필요성	검토해야 할 사항
1	고용 노동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	농업법인도 사업주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		취약계층취업지원 사업					○	민간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에 사회적 농장 관련 정보 제공
3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수준의 적합성
4		(산재근로자)사회심리 재활지원	○	○			○	돌봄농업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5		산재근로자직업훈련		○			○	사회적 농장의 위탁훈련장 지정 가능성 및 자격조건
6		직업훈련생계비 용자	○				○	사회적 농장의 직업훈련과정 인정 가능성
7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용자					○	용자 조건(규모, 이자율 등)
8		장애인 고용장려금					○	상시근로 조건 및 최저임금 이상자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성
9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
10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	지원조건
11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	○				
12	교육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13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	○		○	○	사회적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작업치료, 행동치료, 감각운동치료의 영역으로 인정

13 상세한 검토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3-2(계속). 중앙행정기관 사회보장사업과 사회적 농업의 연계 가능성

연번	부처	사업명	연계 및 협력의 형식				중앙부처 간 협의 필요성과 내용	
			프로그램 공동 기획	서비스 수탁	거버 넌스 참여	지자체 수준 계획 참여	필요성	검토해야 할 사항
14	교육부	WEE 클래스 상담지원	○					
15		교육복지 우선 지원	○	○			○	사회적 농장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16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	○	사회적 농장이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
17	국토 교통부	주거급여				○		
18	대검 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	○			○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정신과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이 지원되는 바, 돌봄농장에서의 활동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타진
19	문화체 육관광 부	통합문화이용권		○			○	사회적 농장의 프로그램도 바우처 사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
20	보건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	○	○		
21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	○	○		
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			
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		○	○	○	다양한 표준모델사업이 있는데, 사회적 농업을 표준모델사업 중 하나로 제시할 방안
24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		○	○	○	사회적 농업을 반영한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추진

표 3-2(계속). 중앙행정기관 사회보장사업과 사회적 농업의 연계 가능성

연번	부처	사업명	연계 및 협력의 형식				중앙부처 간 협의 필요성과 내용		
			프로그램 공동 기획	서비스 수탁	거버 넌스 참여	지자체 수준 계획 참여	필요성	검토해야 할 사항	
25	보건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	○	○				
26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	○	○				
27		노숙인 등 복지지원	○	○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업을 지원하는 내용 중 자활프로그램에 사회적 농장의 참여 방안	
28		자활근로지원	○		○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 사회적 농장 참여 방안	
2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지원	○	○		○	○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지원 바우처를 사회적 농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30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	○		○	○	발달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의 일부로 돌봄농장 활동을 이용할 수 있게 바우처 제도 개선	
31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		○				
32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						
33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3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				
35		여성 가족부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					

표 3-2(계속). 중앙행정기관 사회보장사업과 사회적 농업의 연계 가능성

연번	부처	사업명	연계 및 협력의 형식				중앙부처 간 협의 필요성과 내용	
			프로그램 공동 기획	서비스 수탁	거버 넌스 참여	지자체 수준 계획 참여	필요성	검토해야 할 사항
35	여성 가족부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					
3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			
37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	○	돌봄농장 프로그램 중 치료회복 프로그램 성격으로 참여할 방안
38		청소년활동지원	○		○			
39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					
40		청소년 특별지원	○		○			
4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			
42		학교밖 청소년 지원	○		○			
4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					
44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					
45	행정 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			
4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목록에 제시된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업은, 가령 현금을 직접 지불하거나 현물을 직접 제공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유형의 사업은 ‘농장 내 활동’과 관련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렇게 거르고 남은 사회보장사업의 지침을 검토해 사회적 농업과 연계하거나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프로그램 공동 기획’, ‘서비스 수탁’, ‘거버넌스 참여’, ‘지자체 수준 계획 참여’ 등 네 종류의 연계 및 협력 형식을 제안하였다.

2.1. 프로그램 공동 기획

농장 활동을 바탕으로 잠재적 사회 서비스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는 직능 단체(기관)와 사회적 농업 실천 집단이 서비스를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충남 홍성군의 행복농장이 시행하는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충청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팀이 사회적 농장인 행복농장과 2015년에 공동으로 기획해 5년째 운영 중인 ‘농촌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다. 충청남도 소재 정신건강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일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등 단계별 농작업 체험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종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의 농업 부문 취업을 목표로 한다.¹⁴

¹⁴ ‘일일과정 → 기본과정(4박5일) → 심화과정(14박15일) → 인턴채용 → 정규채용’으로 구성된 일련의 과정이다. 모든 참여자가 전체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후속 단계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 행복농장의 ‘자연구시’에 2015년에 일일과정 17명, 기본과정 31명, 심화과정 4명이 참여했으며, 2016년에는 일일과정 39명, 기본과정 3명, 심화과정 4명이 참여했다. 2017년 이후로는 기본과정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구시 과정을 이수한 정신장애인 중 2명이 인턴 기간을 거쳐 농장 및 농장이 위치

이처럼 농업인과 사회보장사업 시행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이용자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인에게는 다기능 농업의 경로에 진입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농장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확충하는 기회이자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받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사회보장사업 시행 직능단체에서는 새로운 활동(또는 사업)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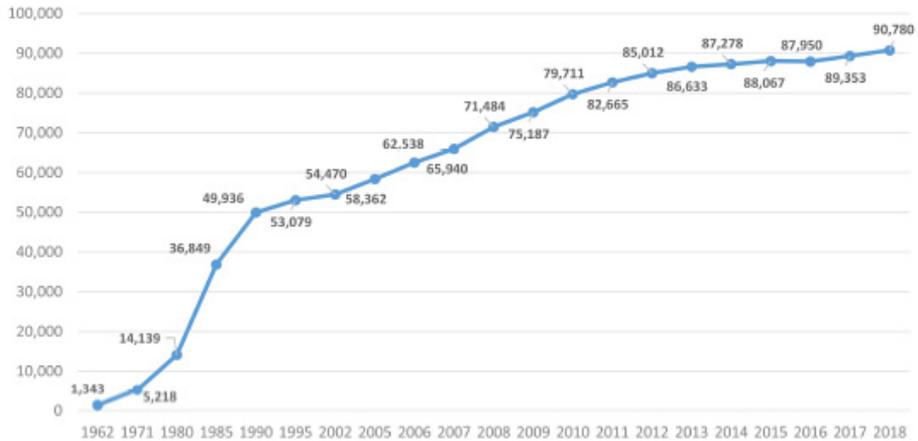
어떤 형태로 연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논의해본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사업’(표 3-2에서 13번 사회보장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잔존능력 계발’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감각·운동치료 등의 서비스 비용을 1인당 월 12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시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선정된 해당 학교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식적으로는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각급 학교의 이른바 ‘특수반’¹⁵ 학생들을 사회적 농장에 초대해 농장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녹색돌봄(green care), 원예치료 등의 개념으로도 알려진 이런 유형의 농장 활동이 일종의 작업치료, 행동치료, 감각 및 운동치료 등의 관점에서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가 적지 않게 제출된 상태이며, 실제로 한국 농촌에서 그런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들도 있다.¹⁶

한 마을의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2015년 1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충청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대해 “증상완화, 자신감 향상, 대인관계 만족감 등 농작업으로 인한 참여자들의 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농작업 자체의 다양성과 다기능성, 일과 여가의 균형 있는 프로그램 구성, 편견없이 존중하는 직원의 태도와 일 중심의 역할 기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충청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웹페이지, <http://www.chmhc.or.kr/business/page1.php>). 행복농장의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대한 소략한 소개로는 김정섭 외(2017)를 참고.

¹⁵ ‘돌봄반’이라고도 부른다.

그림 3-1. 특수교육 대상자 수



※ 전체 학생 수 = 특수학교 학생 수(1962년~) + 특수학급 학생 수(1971년~) + 일반학급 학생 수(2000년~)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수(2009년~)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18.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8년을 기준으로 9만 780명이다(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18). 그 가운데 농촌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도시 대 농촌 인구 비율이 4:1 정도임을 감안하면 농촌 지역에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만 5000명 이상은 되리라 짐작할 수 있다. 특수학교 중 전공과를 설치한 학교 및 전공과 학급 수는 143개 학교, 609개 학급이다. 농업 관련 전공과를 둔 학교는 49개에 달한다. 이처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농업 부문이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가 농장 활동을 실제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례는 드물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업 활동에 바탕을

16 충남 홍성군의 ‘꿈이자라는뜰’, 홍성군의 ‘행복농장’, 전북 완주군의 ‘두레농장’, 세종시의 ‘식초마을영농조합법인’, 충북 보은군의 ‘성원농장’, 전남 나주시의 ‘화답영농조합법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둔 사례는 별로 없는 듯하다. 즉, 잠재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적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사업에서 농업 부문이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결합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다. 하나는 특수교육 부문 직능 종사자들이 농업의 기여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며, 농업인 사이에서도 특수교육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 대한 관심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사업의 시행지침상 보통의 농업인에게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일 테다.¹⁷

그러나 농장에서 펼쳐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농장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농업 측면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관련 직능 종사자의 지식과 농업인의 지식이 결합되어야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형태, ‘프로그램 공동기획’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려면 법규에서 인정되는 직능 종사자가 농업인의 참여를 매개하거나, 해당 법령 혹은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2. 서비스 수탁

여러 정책 영역별로 나뉘어 시행되는 사회보장사업마다 법규에 따라 고유한 전달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사회적 농장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특정한 사회보장사업의 취지와 내용 면에서 부합하더라도 전달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법제를 쉽게 바꿀 수 있을 만큼 사회적 농업이 확산된 상태도 아니다. 이

17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소지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서 다른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록 1>을 참고.

런 상황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집단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특정한 세부 서비스를 전달 체계 상의 제공 주체가 타 행위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이다. 즉, 사회적 농장이 특정 서비스를 맡아 제공하는 하위계약자가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을 예로 들어 살펴본다(표 3-2의 20번). 이 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 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달라진다. 노인에게는 ‘치매 관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는 ‘영양플러스’,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재활서비스’, 임산부에게는 ‘철분제, 엽산제 제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위험군에게는 ‘방문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회적 농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치매 관리’ 또는 ‘장애인 재활서비스’ 등의 연계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서 농장 활동에 바탕을 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사회적 농장은 이 사업의 핵심 실행 주체인 보건소의 하위계약자가 되어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수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업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지역의 보건소가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관, 단체, 학교 등의 집단에 사회적 농장도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2.3. 거버넌스 참여

어떤 종류의 사회보장사업은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을 필수 조건으로 삼아 시행된다. 지원 또는 서비스의 종류가 대상자에 따라 달라져야 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마다 정해진 이용자 자격 (또는 수급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

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이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협업하는 방식의 거버넌스가 필요해진다. 사회적 농장이 그 같은 거버넌스에 참여할 때 나름의 역할을 찾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은 그 지역사회에 발 붙이고 살아 가는 주민이어서 다양한 종류의 비공식적 사회연결망에 포함되어 있다. 그 같은 연결망을 통해 정보와 자원을 동원하거나 유통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의 사단법인 홍성도농교류센터는 2019년 봄에 홍성군치매안심센터¹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내 경증 치매 노인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려는 목적이었다. 홍성도농교류센터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회적 돌봄 농장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차였는데, 홍성군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함으로써 경증 치매 노인에게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시작할 수 있었다. 치매 증상이 경미한 노인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는 요양보호,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특히, 인구 과소화를 경험하는 농촌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장소도 쇠락해 이들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홍성도농교류센터와 홍성군치매안심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해 몇몇 농가에 일주일 1회 경증 치매노인 15명이 방문, 농장기반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케 했다. 농장이 부담하는 프로그램 실행 경비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으로 충당했다. 지역 내 주간활동 서비스 참여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참여자 집단을 구성하며 교통편을 제공하는 역할을 홍성군치매안심센터가 맡았다. 시범사업 형태로 8회기를 진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농촌 지역의 사회적 농장, 농업 관련 단체, 보건의료기관 등이 협력 거버넌스를 형성한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셋이다. 첫째, 기존의 사회보장망 밖에 있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없던 경증 치매 노인들에

¹⁸ 홍성군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로 지정받았다.

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농업은 농촌의 경증 치매 노인에게 익숙한 소재와 활동으로 주간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 셋째, 홍성군 장곡면처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서비스 제공 시설이 있는 홍성읍까지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별도의 시설을 확충하지 않고도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제공 창구를 만들 수 있었다.

이 같은 발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사업에도 접목할 수 있다. 가령,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에 사회적 농장이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 지지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함께 서비스 전반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 기관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예컨대 생활지원비, 의료비,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을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현물로 지원한다. 민간 서비스 기관은 대상 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다. 접수된 대상자 사례를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검토하여 개입 여부와 기간을 결정한다. 이 같은 거버넌스에 사회적 농업 관계자가 참여한다면, 일자리 제공이나 돌봄이나 직업(농업)재활 등의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2.4.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계획에 참여

사회적 농업은 여러 정책 영역에서 수립되는 지역 단위 계획에 포함될 때 제도적 지지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는 ‘농촌발전계획(Rural Development Plan)’에 의거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조직 및 농가에 재정이 지원된다. 농촌발전계획에 사회적 농업이 사업으로 편성되느냐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계획이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법정 의무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나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¹⁹이 이탈리아 사례에서 보는 것 같은 수준의 예산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계획에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농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수준이 영향 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여러 정책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이들 계획에 ‘사회적 농업’이라는 주제가 포함되는 만큼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¹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수립한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기존 정책 사업 시행 현장에서 연계 및 협력 촉진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에서 사회적 농업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두텁게 형성되기까지, 그 실천 농장의 수가 수백을 넘어 1,500여 개에 달하도록 확산되는 과정이 선행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사회적 농업 실천 집단들의 노력이 꾸준했고, 점진적인 법제 정비 과정이 수반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농촌 현장에서 공공 부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능 집단들 간의 협력과 연계의 노력이 있었다.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법제 틀 안에서 공공 부문의 정책 개입으로 사회적 농업이 실천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이다.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지역자활센터들이 영농사업단을 조직한 것이 ‘정책적 의미’에서 사회적 농업 관련 정책의 기원을 이룬다. 물론, 이 때에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에 소개되지도 않았다. 여기에다가 ‘커뮤니티 케어’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이른바 ‘탈시설, 지역사회-기반’을 지향하는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탈리아 및 네덜란드와 한국 사이에는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다. 사회적 농업은 한국에서 아직은 적소에서 맵아를 띄운 소수의 혁신 사례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법제 정비에 앞서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서라도, 즉 현장에서 시행되는 기존의 정책 사업 수준에서 연계와 협력의 내용을 풍성하게 가꾸는 게 중요하다.

3장에서 살펴본 논의를 요약하면, 농촌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이 사회 혁신의 성격을 유지하고 확산되도록 여러 부문 사이의 연계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을 고치지 않고서도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하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장함으로써 다부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 집단과 보건, 사회복지, 노동, 일자리, 교육 등의 영역에 관계하는 직능 집단 사이에 상시적인 정보 교류, 공동학습, 역할 조정 등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표 4-1.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 현장 수준 다부문 연계협력의 형식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 공동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과 비농업 부문 직능 기관이나 단체 등 행위자들이 만나 기존의 정책 사업이나 활동을 연계하기만 해도 시너지(synergy) 창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권장하여, 현장에서 활동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촉진
	사회서비스 위수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업 부문 사회 서비스 정책 사업 시행 주체가 제공하게 되어 있는 서비스(혹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사회적 농장에 위탁하도록 권장 * 서비스 제공 대가(비용),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한 행정 지침이나 정보 제공 및 안내 측면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 수준의 공공기관 간 협의 필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직·기관 간의 상시 소통 구조 형성	거버넌스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예: 주간활동)에 적합한 대상자를 ‘연결’해 주거나, 사회적 농장 외부에서는 사례관리 역할을 농업인이 할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 부문 직능 조직과 협의 구조를 형성 * 일종의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들이 참여(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사회적 농장 참여)
	계획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농업 및 비농업 부문 법정 계획에 사회적 농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시하고, 사업 목표 및 내용을 반영(예: 지역사회보장계획,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등)

2. 중앙행정기관들의 협력에 기초한 시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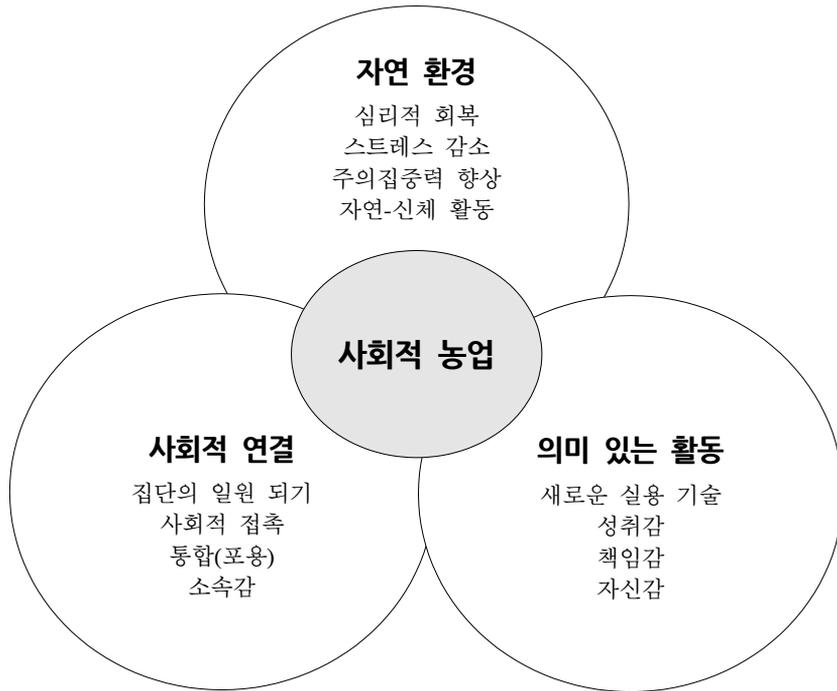
농촌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 집단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상위 수준에서, 즉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협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협력의 형식 가운데 하나가 시범사업 추진이다. 예시적 구상을 두 가지 제안한다.

2.1.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회적 농업

전국에 1세 연령구간별로 9,000~10,000명의 발달장애 학생이 있다. 그 가운데 20% 정도는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이나 직업재활은 장애인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된다.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에서도 특별히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규 교과 외의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도 지역사회활동센터나 장애인고용공단 등의 기관이 직업재활훈련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근년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노동 능력을 고려한 취업처 발굴과 직업재활훈련도 조금씩 확대되는 듯하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그런 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취업처가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사회적 농업 실천과 정책의 경험이 한국보다 앞선 국가들의 초기 발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사회적 농업의 주요 대상이었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은 발달장애인의 특수교육 및 직업재활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 주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최근 진행한 아일랜드에서는 사회적 농업이 지니는 ‘자연 환경’, ‘사회적 연결’,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세 핵심요소로부터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보고서를 낸 바 있다<그림 4-1>.

그림 4-1. 사회적 농업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자료: Social Farming Ireland(2018: 6)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프로젝트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읍·면 단위로 3~10개 이상의 사회적 농장 그룹을 형성한 상태에서 지역 내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돌봄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장활동 프로그램’을 교육당국과 공동으로 기획한다. 둘째,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농장활동 프로그램’은 돌봄과 직업훈련의 두 가지 목표를 지닌 상태로 운영하되, 참여자의 호응을 살펴 고등학생 단계에서 구분하여 진행한다. 셋째, 장애인 복지관 등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과 사회적 농장 그룹의 협력관계도 권장하며, 참여자의 호응을 살펴 마찬가지로 돌봄 성격의 농장활동과 직업재활 성격의 농장활동을 구별해 운영한다. 넷째, 발달장애인을 임시직으로 또는 상용직으로 고용할 의향이 있는 지역사회 내 농장에 대한 교육훈련과 네트워킹을 촉진한다. 다

첫째,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지식과 역량을 갖춘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지역사회 안에서 확보하고, 그 인건비를 농식품부가 제공한다.

2.2. 사회적 농업을 동반하는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주지하듯이,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보건복지 정책의 중대한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층’을 중점에 두고 1단계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여러 지역을 선정해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외, 2018).

- *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 * 노인 독립생활 시 낙상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 실시
-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추진으로 마을 소멸에 대응
-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 * 시군구 ‘주민건강센터’ 설치,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 * 병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 연계
- *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노인의 약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 목표 등)
- *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실시
- * 초고령사회(2026년) 진입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 구축

이렇게 윤곽을 드러낸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원대한 구상이지만, 농촌 지역의 여건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²⁰ 첫째,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안이 국토교통부, 행정

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발표되었는데,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조율에 바탕을 둔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농촌 지역에서는 군청소재지의 큰 ‘읍’ 지역에서나 추진되는 바, 다수의 면 또는 소규모 읍 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면 및 소읍에서의 주거, 물리적 시설 인프라에 관련된 정책 사업은 중심지활성화사업, 취약지역 주택개조사업 등 농식품부의 지역개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돌봄 및 주간활동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가 농촌 지역에서는 특히 두드러진다.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정도 포진된 돌봄 및 주간활동 서비스의 거점 분포는 인구밀도가 낮고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 접근성이 현저하게 불리한 농촌 지역, 특히 면 지역에서는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다. 특히, 주간활동 서비스는 공급 자체가 희박한 실정이다. 반면에 어느 면 지역이든 농장은 아주 많은데, 사회적 농장을 육성한다면 사회적 농장이 접근성이 용이한 주간활동 및 돌봄 서비스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미 발표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내용에서는 ‘사회적 농업’ 부문과의 연계협력 여지가 미흡해 보이지만, 소지역 단위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같은 것을 구상하고 실험할 필요가 있다. 그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 인구 5,000명 미만의 면 또는 소읍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하는 가운데 경증 치매 노인 및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및 돌봄 서비스, 서비스 접근성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한다.
- * 농촌 특성에 맞게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 주간활동 서비스의 중요 공급자가 되게 한다.
- *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주간보호센터나 재가 돌봄 서비스 외에, 사회적 농장 혹은 사회적 농장에 인접한 농촌시설(예: 권역사업으로 형성한

20 물론, 이 같은 문제점의 주된 원인은 서비스 전달 비용을 더 들게 만드는 농촌 지역의 인구지리학적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다.

커뮤니티센터 및 도농교류센터, 경로당 등)을 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비용을 보전할 재정 등을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마련한다.

- *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개발정책 사업으로 형성한 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권장한다.
- * 보건복지부는 농촌 지역의 보건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농업 부문과의 협력을 권장한다. 특히, 사례관리를 담당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지원한다.

3.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 정비

3.1. 기존 법제와 계획 제도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제도 기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수준의 법률일 테다. 가령, ‘사회적 농업 육성법’을 제정한다면 중대한 레짐의 변화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니는 혼종적 성격과 사회 혁신 실천으로서 의미를 제대로 살린 레짐의 변화는 미시 수준에서의 수많은 실천을 통과하는 가운데 가능할 것이다. 즉, 법률 제정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의 필요조건이되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법률 제정 이전에 이미 형성된 중앙정부 수준의 법제 틀 안에 사회적 농업 실천을 정위(定位)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기존의 여러 법률을 매개로 마련된 ‘계획 제도’이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이 관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법정계획에 사회적 농업 확산 전략을 반영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4-2. 사회적 농업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법정 계획과 근거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법정의무계획 * 광역지자체: 법정의무계획 * 기초지자체: 법정의무계획 * 기본계획(5년주기), 시행계획(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농식품부): 법정의무계획 * 광역지자체: 법정의무계획 * 기초지자체: 법정의무계획 * 기본계획(5년주기)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건복지부): 법정의무계획 * 광역지자체: 법정의무계획 * 기초지자체: 법정의무계획 * 기본계획(5년주기/정부), 추진계획(매년/광역·기초 지자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건복지부): 법정의무계획 * 종합계획(5년주기/정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교육법): 법정의무계획 * 광역지자체: 법정의무계획 * 기본계획(5년주기/정부), 시행계획(매년/광역지자체)

3.2.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농업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농업 실천이 확산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도 복잡다양하게 관련되는 시기에는 하나의 법률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때 제정할 법률은 사회적 농업이 지니는 ‘혼종성’, ‘사회 혁신’ 등의 특징을 그대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사회적 농업 관련 법률에 ‘계획 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규정해 놓느냐의 문제다. 여러 법률들이 대체로 5년 주기의 중앙정부 부처 수준의 전략 계획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는데, 특정 정책을 중기적 전략하에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종류의 계획이 난립하기에 계획 수립에 따를 수 있는 행정 부문의 피로도 또는 형식적 계획 수립의 문제점도 있을 법하다. 사회적 농업 실천을 확산하려는 정책이 전략적 사고하에 수립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별도의 계획 제도를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이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계획” 등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의 단위를 중앙정부 부처로 한정할 것인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화 혹은 권고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계획 제도의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의무화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계획 수립 의무는 중앙정부에 부여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권고하는 정도로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비농업 부문의 계획, 가령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사회적 농업(또는 돌봄 농업) 활용 및 확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케 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장의 행위자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구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여러 국가들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일정 수준 확산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국면에 접어들면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지원 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반에 ‘국립 농업 및 돌봄 지원센터’를 농업부와 보건복지부 두 정부부처가 협력해 설치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조력케 한 바 있다.²¹ 이탈리아도 2015년에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연방법률을 제정하면서 지원기구(사회적 농업 관찰국)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²² 이탈리아나 네덜란드보다는 늦게

21 김정섭 외(2017), Hassink(2017) 등의 문헌을 참고.

22 이탈리아의 “사회적농업법”을 <부록 2>에 실었다. 이 법은 사회적 농업 관찰국(Social Farming Observatory)의 임무를 크게 다섯 가지로 규정하였다. a) 사회

시작되었지만, 2019년 현재 약 77개의 사회적 농장에서 790명의 참여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이른 아일랜드도 근년에 국가 수준의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가 재정을 후원해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사무국(Social Farming Ireland)”을 민간 부문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도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의 틀을 발표하면서 ‘지원센터 설치’를 제도적 기반 구축 분야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장에서의 사회적 농업 실천이 어느 정도 확산되면, 중앙정부 수준의 직접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원의 내용은 ‘지식’과 ‘재정’이다. 지원 기구의 역할은 무엇보다 ‘지식’ 측면에서의 지원에 있다. 법률에 그 같은 지원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 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농업에 필요한 지식은 ‘혼종적 지식’이며 ‘현장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지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원기구는 최대한 현장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하며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이 공동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사례가 그랬고, 이탈리아의 “사회적농업법”이 규정한 관찰국의 운영 구조 또한 그런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도 정부의 후원을 받지만 운영은 민간 조직이 주도한다.

적 농업 분야의 공공기관 활동 가이드라인에 제시될 경영체 인정을 위한 균일한 표준, 사회적 농업 활동 점검·평가, 행정 절차 간소화, 기술적 지원 수단 마련, 경영체 교육 및 지원, 승인 교육 과정에 대한 규정, 효과적인 모델 규정, 경영체와 공공행정 간의 표준 계약 개발. b)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국내 사회적 농업 활동의 현황과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점검하고 가공. c) 사회적 농업 활동의 효과성과 지역(local) 서비스 네트워크로의 편입과 관련된 연구자료 수집 및 합동 평가. d) 유럽연합의 통합정책(Cohesion Policy)과 농촌 개발 정책에서 농업의 사회 통합을 조직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제안. e) 광역지역(Legion) 및 지방(local) 당국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수단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제안.

그림 4-2.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개요

참고1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비 전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 실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확대 ▶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 농업계 내외에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연차별 주요과제	기반조성(19~20)	도약(21~22)	확산(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 확대 (19: 18개소→20: 30) ▲ 온라인 플랫폼 구축(19) ▲ 성과지표 개발(19) ▲ 지원센터 설치(20) ▲ 법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 확대 (21: 50개소→22: 70) ▲ 분야별 거점농장 운영 ▲ 사회적 농업 교육 홍보 지속 확대 ▲ 돌봄공동체 조성(~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 확대 (23: 100개소) ▲ 등록제 도입(23~) ▲ 공공기관 구매 추진 ▲ 커뮤니티 케어 등 복지제도 연계 추진
분야별 주요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지도 제고 - 온라인 채널 홍보, 농업인-지자체 대상 교육 2.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 - 예비 사회적 농장 및 거점농장 도입, 역량 강화, 등록제 도입 3.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적 농업 사업비 지원, (가칭)돌봄공동체 조성, 제도적 지원 4. 생산품 판매 지원 - 로컬푸드 연계, 사회적 농업 생산품 홍보 및 구매 활성화 5.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네트워크 지원 및 체계 구축, 사회적 농업 협의체 확대 6.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적 농업 연구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센터 설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년 3월 25일자),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단순하게 “사회적 농업 육성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보장할 수 없다. 법률 제정 같은 상위 수준의 레짐 변화가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러므로 미시(하위) 수준에서 일어나는 실천을 확산하는 동시에 거시(상위) 수준에서 레짐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농업 발전 과정을 경험한 네덜란드나 이탈리아의 사례로부터,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니는 혁신적 성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호받으면서 확산되고, 그 결과로 레짐의 변화(법률 제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적소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 같은 전략적 적소 관리 측면에서 정책이나 법제를 매개 삼아 중앙행정기관들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보려 했다.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의 일종이며 농업과 비농업 부문의 활동이 결합되는 혼종적 실천이므로, 농촌 현장에서도 돌봄, 일자리,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비농업 부문 정책 사업이 사회적 농업과 연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사회보장사업이 300여 종류가 넘는다. ‘프로그램 공동 기획’, ‘서비스 위수탁’, ‘지방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형성’, ‘지자체 수준의 계획 참여’ 등의 형식으로 사회적 농장과 연계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이 약 46개가 될 듯하다.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사회보장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사업 지침을 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사업 연계를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회적 농업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들이 처음부터 협력해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농촌 현장에서 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정책 사업 모델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가령, 발달장애인의 특수교육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되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이 결합하는 방식의 정책 사업이나, 사회적 농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사업 같은 것을 시범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이나 농촌에 관계된 기존의 법률과 보건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들이 상당한 수준의 ‘계획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성 계획 제도 틀에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실천을 권장하도록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애초에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계획’이나 농촌 주민의 보건복지와 관련해 수립하게 되어 있는 ‘농어촌보건복지기본 계획’에 사회적 농업 관련 정책 과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농업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도 사회적 농업이 지니는 혼종적 특징과 사회 혁신이라는 가치 지향을 유지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법제 틀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에 반영할 정책 추진체계나 거버넌스 문제에서도 다부문 관점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 조력할 지원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부록 1

사회적 농업과 연계 가능성 높은 사회보장사업의 개요

(1)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사업

- 목적: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
 - 2) 분기당 지급 총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18년: 24만원, '19년 27만원, '20년 30만원)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100(대규모 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
- 선정기준: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 대상: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역월 상의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또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고시한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은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대규모 기업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의견: 자영농이 아니라 농업 생산활동을 하는 농업법인 등에 고용된 농업 노동자의 경우, 위의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으로는, 노동자를 고용한 농업법인은 비농업 부문의 사업체와 다를 바 없는 법적 지위를 지니므로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농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농업 부문 사업체의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비율을 산정해 포함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2) [고용노동부] 취업계층취업지원 사업

- 목적: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보완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
- 지원내용: 노숙인, 건설인력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기관을 지원
- 선정기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노숙인, 건설인력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 의견: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고용 서비스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농업 부문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하는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은 거의 없다. 농촌 지역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농업 생산 부문 취업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농장 안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목적: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지원내용:
 - 1)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2018년까지 인증/지정된 사회적 기업: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 (30%~70%) 차등 적용
 - 2019년부터 인증/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50%, 인증사회적 기업 40%
- 선정기준: 매년 광역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절차)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인증한다. 제8조에 명시된 인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의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 사업은 앞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과 연계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등은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취지와 대부분 목적을 공유하므로,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게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

(4)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목적: 산재 및 장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 지원내용:
 - 1)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2) (희망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4회기, 6회기, 8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최대 14만원) 및 교통비, 식대 지원
- 선정기준:
 - 1) (심리상담 서비스) 다차원 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자 및 기타 심리검사 기준 상 상담이 필요한 자
 - 2)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입원, 통원 중인 산재근로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장애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애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애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입원산재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의료기관에 비용 지원을 통한 취미활동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산재 요양환자로서 멘토링이 필요한 자

● 지원 대상:

- 1)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배우자·자녀
- 2) (희망 찾기/사회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장애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애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3)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애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14급)
- 4)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점포운영자 등

- 의견: 해당 사업의 지원내용 중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사회적 농장의 돌봄농업 프로그램을 근로복지공단과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획하거나,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일부를 사회적 농장에 위탁 운영케 하는 실험이 가능하다. 부처 간 협의, 또는 농촌 현장 수준에서 사회적 농장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

(5)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직업훈련

- 목적: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애인(산재장애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 지원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선정기준: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예산)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 지원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애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의견: 사회적 농장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장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실행가능성이 있다. 동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내용 중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령 제2997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에 의하면, 제 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라.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한, 제2호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전용하는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중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로 전용하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춰야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농장이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물리적 시설 측면보다는 인적 자원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는 거의 없을 듯하다. 이 자격 조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의 조정·협의를 필요해 보인다.

(6)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 목적: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하는 서비스
-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 원(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선정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배우자 합산 연간 소득액 8,000만원 이하인 자)
- 지원 대상: 3주 이상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중 연간 소득 금액이 8,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 직업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의견: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4호 제40조(적합훈련과정의 요건)에 의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적합훈련과정은 법 제15조·19조 및 시행령 제 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일 소정훈련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된다.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별표1에 따른 직종의 훈련으로서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이하이고 소정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 다만, 시행령 제 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훈련기간이 3개월 미만(훈련시간 35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소정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와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훈련과정으로 선택하여 제11조에 따른 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우수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은 과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적합훈련과정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별표1)에서 농림·수산 분야를 살펴보면, 전략산업직종에서는 종자생산·유통, 할랄/코셔, 스마트팜구축, 그리고 서비스산업직종에서 말조련, 곤충사육, 동물매개 치유로 제한되어 있다. 사회적 농장에서 운영하는 농업·기반 직업훈련과정이 폭넓게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게 하는 방안을 부처 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7)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용자

● 목적:

- 1)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
- 2)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 지원내용:

1) 시설장비융자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2) 시설장비지원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3억 원 이내
- 지원조건: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지원사업주 결정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의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15851호]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경우에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21조(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융자금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사회적 농장이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

단에 신청하여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집단에 이 같은 정책 사업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8)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

- 지원내용:

- 1)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 근속 기간 등에 따라 1인당 월 15만 원~60만 원을 지급
- 2)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중증이 아닌 장애인(경증))
 - * 중증이 아닌 남성(경증 남성) 30만원, 중증이 아닌 여성(경증 여성) 40만원, 중증 남성 50만원, 중증 여성 60만원('18년 1월발생분부터)
 - 단, 2017년 12월 발생분까지 중증이 아닌 남성(경증 남성))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만 원, 입사 3년 초과~만 5년까지: 21만 원, 입사 만 5년 초과: 15만 원
 - (중증이 아닌 여성(경증 여성))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40만 원, 입사 3년 초과~만 5년까지: 28만 원, 입사 만 5년 초과: 20만 원
 - (중증 남성) 40만 원
 - (중증 여성) 60만 원
 - * '16년 발생 분부터 중증 여성 60만원(이전 연도 발생분 50만원)
 - 단,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17.12월 까지), '18년 1월부터 계속 지원
- 3) 지원 기간
 - 월별로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선정기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의견: 상시근로자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회적 농장에서의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상시근로 조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 근로능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농작업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변경이 가능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9)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목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훈련 기간 동안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기술, 직장예절, 직장 내 의사소통 등 직장적응을 도와주며,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일반 노동시장으로 이행지원
- 지원내용:
 - 1)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1회 지급)
 - 2) 훈련일비
 - 일비: 1일 17,000원
 - 숙박비: 1박 10,000원
 - (현장훈련<출석>일수+사전훈련<출석>일수)*17,000원
 - 훈련기간: 3주~7주
 - 훈련시간: 1일 4시간~8시간
 - 3) 인턴제: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80만원), 인턴기간: 6개월
 - 4) 정규직 전환지원금
- 선정기준: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
- 지원 대상:
 - 1)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 2) 사업체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 의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에 따라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용자·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훈련계획, 훈련시설, 장비 및 직업훈련 교사 등의 현황, 훈련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농장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훈련시설, 장비 및 직업훈련 교사 등의 현황에 관해서는 소규모 농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해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이 농업 경영체에서 근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직업훈련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

(10)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목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 지원내용:
 - 1)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
 - 2)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
- 선정기준:
 - 1)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
 - 2) 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 대상: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의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따르면,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58호]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을 살펴보면,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

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적 농장이 위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과 이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 경영체가 그와 같은 시설 조건을 갖추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특히, 규모와 급여 측면에서의 조건이 높은 편이다. 사회적 농업이 지역사회 기반 실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기준을 농촌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지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 지역사회에서 여러 농장들이 연합하여 여러 명의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경우에 관한 시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11)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 목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참여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단 양성교육을 이수한 동료지원가(중증장애인)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함.
- 지원내용: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취업 연계 서비스
- 선정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고,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인 자
- 지원 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
 - 1) 참여자
 -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 * 2019년 기준 9,600명 모집
 - 2) 동료지원가
 - 모집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중증장애인
 - *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월 최소 60시간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 2019년 기준 200명 모집
- 의견: 이 사업의 수행기관이 될 수 있는 곳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농장이 수행기관이 되기는 어렵고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수행기관과 사회적 농장이 공동으로 동료활동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기관으로부터 작업장 배치를 하도급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 [교육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목적: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 지원내용: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포함) 지원
- 지원 대상:
 - 1)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60%이하
 - 3) (3순위) 학교장 추천·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4)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5) (선정 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의견: 사회적 농장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교에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지역 내 학교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협력이 가능해지면, 사회적 농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일정 부분을 위수탁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농촌 지역에서 학교에 인접한 농장 환경은 다양한 종류의 학습 소재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교육부의 중요한 지역사회 학교 정책

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지역사회 주민이 학교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공교육 문제에 접근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계기로 형성되는 농촌 지역사회 내 교육 거버넌스에 사회적 농장이 참여하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매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여지가 많다.

(13)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 목적: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잔존능력 계발
- 지원내용:
 - 1)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감각·운동치료
 - 2) 치료지원 금액
 - 월 12만 원(1일 3만 원 이내)
 - 3) 치료지원 방법
 - 전자카드(공센 카드) 사용
-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시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해당 학교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 결정
- 지원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의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24조(치료지원)의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법 제 59조의 1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이에 따라 사회적 농장이 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치료기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위에 명시된 면허 또는 민간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농장이 위의 자격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치료지원이 이루어지는 항목 중 일부분을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로부터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수탁받아 사회적 농장이 운영하는 형식이 될 터이다. 농장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위의 사업이 지원하는 작업치료, 행동치료, 감각·운동치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공동 기획이 필수적이며, 그렇게 공동 기획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특수교육과 관련된 여러 시책은 지방 수준에서의 장애인 복지 관련 계획이나 평생교육 관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지자체 수준의 관련 계획에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14) [교육부]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 목적: 학교폭력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 지원 및 학업중단 방지
- 지원내용:
 - 1)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2)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 3)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4)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학교폭력, 학업중단 위기,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의견: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련 제285호] 제3조(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민간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 사업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13조(연계·협력 및 협의체 구성)에 의하면, 교육감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상담·복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농장이 교육부와의 연계를 통해 위(Wee) 센터 또는 위(Wee) 스쿨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또 통학형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를 수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15) [교육부] 교육복지 우선 지원

- 목적: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 지원내용:

- 1)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2)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3)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4)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선정기준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 지원 대상:

- 1)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2)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

- 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 의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106호] 제15조(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등)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므로, 시·도교육감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농장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적 농장은 수급자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교육 당국과의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한 프로그램 시행을 교육 당국으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16) [교육부] 성인학습자(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 목적: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총 5000여명 대상, 1인당 연간 35만원
 - 2) 대상교육: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
- 선정기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2) 「장애인연금법」 제2호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4)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의견: 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58호]에 의하면, 평생교육기관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교육청 또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 조건이 각각 다르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제시하는 기준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거나 일정 수 이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회적 농장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평생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탁받아서 사회적 농장이 실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평생교육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획에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농장이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기관으로 등록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행정기관들 사이의 협의도 필요하다.

(17)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 목적: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지원내용:
 - 1)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산정
 - 2) 자가 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380만원 한도)로 설치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
- 의견: 주거급여법[법률 제13805호] 제13조(조사의 방법·절차)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2조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장기관”)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수급권자·수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된다. 제3항에서는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12조(조사의 의뢰)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농장이 직접적으로 수급권자·수급자 대상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농업 참여자들에게 본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중증 장애인이 사회적 농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사회적 농장으로부터 장기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혹은 그렇게 하려는 경우에 겪는 어려움이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농촌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거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 사회적 농장 이용자 집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정보를 유통하고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장애인 정책 관련 계획에 사회적 농업을 정책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일이 필요하다.

(18)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 목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 및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재활을 도움

● 지원내용

- 1)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0,000원, 총 50,000,000원 한도 내에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2) 심리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정신과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 지원
- 3) 생계비 지원은 월1회씩 최대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 1인은 500,000원, 2인 가족은 800,000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0,000원을 증액하여 지원
- 4) 학자금 지원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초등학생 500,000원, 중학생 8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간 별도로 지원), 대학생 1,000,000원
- 5) 장례비 지원은 유족에게 3,000,000원 한도로 장례실비 지원

● 선정기준

- 1)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2)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고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자
- 3)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 등

● 지원 대상

- 1)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 2) 구체적인 대상자는 타인의 다음과 같음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했을 경우

- 의견: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14583호]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3항과 4항에 의하여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80호]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를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한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하고,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농장이 보호시설 운영 수탁 기관이 되는 것은 사실상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농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기관과 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하고 프로그램 실행을 수탁하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사이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19)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 지원내용:
 -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개인당 1매 발급(1매당 연 8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3.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교육 급여 수급자 포함된 동일세대원 포함) 및 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의견: 문화누리(<http://www.mnuri.kr>)에 의하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은 지역주관처의 가맹점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각의 지역주관처마다 제시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자격요건과 업종이 다르며, 이에 따라 사회적 농장이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이 가능한 대상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각 지역주관처와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목적: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 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
- 지원내용:
 - 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 지원 대상:
 - 1)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노인
 - 영양플러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 방문건강관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위험군, 질환군
- 의견: 사회적 농장은 본 사업이 지원하는 서비스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관리 서비스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사업의 핵심 실행 주체인 보건소는 지역보건법[법률 제14895호]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4호에서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제5호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지자체 수준에서

각 지역의 보건소와 사회적 농장이 연계하여 협력관계를 맺는다면, 본 사업에서 사회적 농장의 역할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1)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목적: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줘 외로움에 의한 독거노인 고독사 및 자살 예방
- 지원내용:
 - 1) 다음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쪽방·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전혀 없음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제한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 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어르신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우울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 2)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1명의 친구를 만들어줌
- 지원 대상: 가족·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의견: 노인복지법[법률 제16243호]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분류되는데, 사회적 농장은 그런 종류의 전문 시설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농촌 지역 내 노인복지 관련 거버넌스에 사회적 농업 실천 집단이 참여하면서,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농장활동 기반 프로그램을 여러 부문 행위자들

이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이때 사회적 농장은 프로그램 수탁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농촌에서 노인의 사회관계는 농장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쉽게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관련 법정계획에도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목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 지원내용
 - 1)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인력파견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 2) 근무시간 및 급여: 기업 및 기관별 운영규정에 의함
-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의견: 한국노인인력개발원(<http://kordi.or.kr>)에 따르면, 수행기관의 선정은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기준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참여노인, 노인의 사회활동 다양성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여러 수행기관에 적절히 배분되기 때문에 사회적 농장은 적절한 근로 및 돌봄 프로그램을 기획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본 사업의 수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목적: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도모

- 지원내용:
 -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 아동 청소년 정서 발달 서비스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
 - 자살 고위험군 예방 서비스
 -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 장애인, 산모 등 건강 취약계층 운동 처방 서비스
 -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선정기준: 장애인, 노인 대상사업 및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 의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45호]

제16조(제공자 등록)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한다. 사회적 농장은 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유형 중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는 지자체 수준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거나 혁신하려는 복지 분야의 계획 및 거버넌스에 사회적 농업 실천 집단이 참여할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활용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표준모델사업 지침’에 제시된 여러 자격 기준이 농촌 지역에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

(24)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 목적: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지원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
- 지원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19년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하되,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다른 대상자에 대한 사업 실시 가능
- 의견: 사업주체가 기초 자치단체(시·군·구)를 기본 사업 단위로 하되, 노숙인·정신질환자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선정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를 선정하며, 자체 재원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분야에서 민·관 협력과 다직종 연계를 충실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한다. 따라서 사회적 농장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사회적 농업을 매개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거버넌스에 사회적 농업 관련 행위자가 참여하는 것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계획에 사회적 농업을 반영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정책사업이지만, 농촌 실정을 충분히 배려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령, 교통접근성이나 사회복지 및 의료 전문기관의 밀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농업을 적극 육성할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사회적 농업을 반영한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같은 것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25)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

- 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원내용:
 - 1) 돌봄 프로그램 운영: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요자 선호도 및 가용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등에서 돌봄 프로그램 결정
 - 공통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제공하되, 학습활동(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능력을 갖춘 인력의 섭외 등에 따라 결정

- 선정기준: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저/고학년, 상시 돌봄 대상자/일시돌봄 대상자

- 의견: 2019다함께돌봄사업안내 상의 위탁기준을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위탁운영자 신청자격이 없는 단체(주민협의체 등)의 경우는 상기 취지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운영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관리,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운영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다음으로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비영리법인이 지역 내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해온 경우 등).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당해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을 위하여 기존에 있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농장은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연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농장이 직접 서비스 수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역 아동 돌봄과 관련된 거버넌스에 사회적 농업 실천 집단이 참여해, 농장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탁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6)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 목적: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 복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 1) 기본서비스
 - 가정 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 통합사례관리
 - 2) 서비스 예시
 - 신체·건강 서비스: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산전 산후 관리, 부모 교육 등
 - 인지·언어 서비스: 기초학습, 부모교육 등
 - 정서·행동 서비스: 사회정서, 부모교육 등
 - 3)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 지원내용
 - 전국 시·군· 드림스타트 운영지원, 드림스타트 공무원과 민간 전문 요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행복 e음 사용 지원, 홍보 및 후원개발 지원
- 선정기준
 - 1) 지원 대상: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 2) 연령 기준: 0~12세(13세 초과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은 포함)
- 지원 대상: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만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양육환경 및 아동 발달 사정을 통해 서비스 대상 선정함

- 의견: 본 사업의 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와 시·도[아동 업무 담당 부서], 시·군·구[시·군·구 드림스타트],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군·구[시·군·구 드림스타트]는 주요 업무 중 드림스타트 중심의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을 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은 지역 내 아동통합서비스 협력체계 운영 지원업무와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적농장은 시·군·구[시·군·구 드림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 복지지원

- 목적: 노숙인 등의 권익 보호,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 지원내용: 노숙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노숙인시설 입소자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재활프로그램비 지원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 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매 지원
- 선정기준: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법인)
-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또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법인)
- 의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42호] 제 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명시된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

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회적 농장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과 농장활동에 기반을 둔 자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여 수탁 시행할 수 있을 듯하다. 이 경우, 운영 지원의 세부 항목이 사회적 농장에도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28)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지원

- 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지원내용
 - 1)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3,440(57,440)
 - 2)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46,790(50,790)
 - 3)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27,970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2)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3) 기타기준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취성패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의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5875호] 제18조의 5(자활의 교육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따라서 본 사업의 주체로 사회적 농장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와의 협력관계를 이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자활센터들이 영농사업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체로 ‘시장진입형’으로 발전할 것을 목표로 시작하지만 농산물 시장 가격의 저위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상태에서 그 목표를 달성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지역자활센터의 상당수가 자산을 독립적으로 취득, 유지할 수 없는 법규상의 제약에 놓여 있으므로 영농 기반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농장들과 협력 구조를 만들어 농업인과 자활급여 수급자가 함께 영농하는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때 급여는 ‘근로유지형’으로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산 집행의 중복 우려나 업무분장상의 문제점이 거론될 수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

(29)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지원

- 목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1) 주간활동서비스
 - 서비스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월 88시간(단가 12,960원)
 - 2) 방과후돌봄서비스
 - 서비스내용: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월 44시간(단가 12,960원)
- 지원 대상
 - 1) 주간활동 서비스: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500명('19년)
 - 2) 방과후돌봄서비스: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19년)
- 의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45호]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45호] 제16조(제공자 등록)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사회적 농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13호]의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지역 수준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 목적: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내용:

1)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 원(본인 부담금 2만 원)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18만 원(본인 부담금 4만 원)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16만 원(본인 부담금 6만 원)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14만 원(본인 부담금 8만 원)

- 2) 서비스 내용: 언어·듣는힘,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선정기준:

1)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2,470,000원, 2인 가구: 4,746,000원, 3인 가구: 6,763,000원, 4인 가구: 7,741,000원, 5인 가구: 8,168,000원, 6인 가구: 8,595,000원

2)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3)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뇌면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구

2)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3)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뇌면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의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 제14332호]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6. 제32조에 따른 자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센터가 복지지원 제공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 인력 등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의 내용과 관

련한 정보를 지역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사회적 농장이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31)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 목적: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은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
- 지원내용
 - 1) 일반형 일자리(종일제): 1,745,150원(월)
 - 2)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872,580원(월)
- 지원 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에 따라 선발
 - 1순위: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급~3급)장애인
 - 2순위: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급~3급)장애인,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급~6급)장애인
 - 3순위: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의견: 본 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광역자치단체(시·도)와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장애유형별 적합 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과 지역특화 장애인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광역자치단체(시·도),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적 농장은 이러한 추진체계들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초기에서부터 공동으로 기획하는 게 바람직하다.

(32)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 목적: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1) 직업 적응훈련수당: 월 7만 원
-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수당
 - 훈련 준비금: 1회 4만 원
 - 가게 보조수당: 월 7만 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 원
 - 교통비: 월 5만 원
 - 식비: 월 5만 원
 - 자격 취득수당: 1회 5만 원
- 2) 지원 고용 수당
 - 훈련 준비금: 4만 원(사전훈련 포함 6일 이상 출석한 사람(1회))
 - 일비: 1일 17,000원
 - 사업주 보조금: 훈련생 1인당 1일 19,340원

● 선정기준:

- 1)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 2) 연령 기준: 신청하는 당해 연도 만 15세 이상
- 3)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 의견: 사회적 농장이 본 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복지시설과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보건복지부]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목적

- 1)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노숙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 2)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사범, 주취상태 범죄자 등의 치료, 재활을 지원하여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 재범을 방지

● 지원내용

- 1)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2)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3)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선정기준: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 지원 대상:

- 1)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2) 이용대상
 -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 의견: 사회적 농장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협력하에 재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실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성과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적 농장 재활 프로그램 수탁운영자로 사회적 농장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4)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목적: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지지하고 빈곤을 예방
- 지원내용: 대상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전반을 지원
 - 공공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 *1가구당 생활지원비, 의료비 및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최대 50만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 민간서비스: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 선정기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
 - 접수된 대상자는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하여 대상자와의 개입기간을 결정
- 지원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구
 - 수익자 부담은 없음
- 의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와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시·도,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으로

구성된다. 시·군·구와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며, 타 사업부서 및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농장이 희망복지지원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기반 복지와 농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5)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 목적: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지원내용:
 - 1)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원금 지급
 - 1인당 총 300만 원
 - 2) 지원금 지급 방식
 - 1인당 월 60만 원씩 3개월간 인턴 연계 기업에 지원
 -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인턴 연계 기업에 지원하고, 인턴 연계 기업과 인턴 간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고용이 지속 되는 경우 인턴 및 기업에게 “취업 장려금” 60만원 1회 지원
- 선정기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구직 등록된 결혼이민여성
- 지원 대상: 결혼이민여성
- 의견: 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saeil.mogef.go.kr>)에서 인턴 구인신청(업체)을 등록할 수 있다.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를 발굴하여 인턴을 선정하고 알선한다. 인턴근무(협약서) 후,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계기업이 인턴에 임금을 지급하고 새일센터는 기업의 임금지급 확인 후 기업에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60만원, 인턴에 60만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사회적 농장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인턴 구인신청을 통해 선발절차를 거쳐 업체로 선정된다면, 본 사업의 수행주체로서 기 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사회적 농장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3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목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1) 한국어 교육(집합/방문):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 2)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집합/방문)
 -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제공
 -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3) 상담: 다문화가족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 4)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 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
- 5)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 운영지원
- 6)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 지원 대상

-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2)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4)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의견: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 15204호] 제 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해 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업무 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농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사업수행 주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기획, 제공할 수 있다.

(37)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통한 심신 회복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 지원내용
 - 1)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지원 보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
- 선정기준: 가정폭력 피해 여부
-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의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58호] 제 8조(보호시설의 업무)에 따르면, 보호시설이 피해자등에 제공하는 업무 중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해야 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의 종사자 직종과 수,

인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적 농장이 본 사업의 수행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설치기준을 갖추어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기존 보호시설과의 협력관계 위에서 기획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기획, 추진해볼 만하다.

(38)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지원

- 목적: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 지원내용
 - 1) 지자체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 2)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 선정기준: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 사업별 대상 선정 기준 상이
- 지원 대상: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보편적 사업으로 전체 청소년이 수혜자이며, 수급자 개별 선정은 없음
- 의견: 본 사업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청소년활동원을 통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농장이 지자체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다.

(39) [여성가족부]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 목적: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문화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통합적·단계적 지원 제공
- 지원내용
 - 중도 입국 청소년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 전일제, 여름학교, 방과 후, 주말 프로그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선정기준: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 청소년
- 지원 대상: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 청소년
- 의견: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 농장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조직과의 협력관계를 이루어 시범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다.

(40) [여성가족부] 청소년 특별지원

-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1)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월 50만원 이내)
- 2) 건강지원: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연 200만원 내외)
- 3)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수업료-월 15만원, 검정고시-월30만원 이내)
- 4)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월 36만원 이내)
- 5)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 (연 350만원 이내)
- 6)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25만원 별도)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

*단, 생활, 건강 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의견: 본 사업의 추진 체계별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특별지원 사업 총괄·조정과 사업 운영 지침 마련 및 보급, 국고 보조금 확보 및 지원, 제도개선을 한다. 시·도에서는 특별지원 사업 세부추진 계획 및 자체 예산 확보, 예산 범위내에서 CYS-Net 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시행기관 선정 및 예산 배정(청소년 인구 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소재지 우선 선정 등), 예산의 집행 관리와 더불어 관내 학교,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관련기관, 지역주민 대상 등에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시·군·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하며, 사업비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사례관리 계약 의뢰를 하고 대상 청소년의 사례관리 현황 지도·감독을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과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을 결정하고 그 밖에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그리고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협력기관들은 특별지원 청소년 발굴 및 대상자 신청, 특별지원청소년 상담 및 사례 관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별 개인기록 관리, 연계체제 구축 및 홍보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적 농장은 지역수준에서 이러한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자립지원이나 활동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41)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 목적: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 지원내용: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9세~24세 위기청소년
- 의견: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통합지원체계의 구성에 사회적 농장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에 의거하여 사회적 농장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자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 지원

●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 지원내용

- 1) 유·무선 상담: 전화(지역 번호+1388), 휴대전화 문화상담(#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2)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청소년동반자):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지지 제공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의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06호] 제2조(정의)3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수행해야하는 업무 중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농장은 여성가족부령에 명시된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 목적: 영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영농분야의 정착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자 하는 서비스

- 지원내용

- 1) 영농 실습지원

- 지원 대상: 영농 희망자
- 지원 내용: 실습 농가 및 실습자 실습수당 제공
- 지원 조건: 월 20일, 일 8시간 이상 현장실습실시

- 2) 농촌 정착 커뮤니티 형성 지원 집들이 행사 비용 사후 지원

- 3) 창업 농가 운영자금 지원

- 지원 대상: 영농지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영농활동 중인 북한이탈주민 중 독립 자영농으로 성장 가능한 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가능하거나, 담보 제공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비료, 사료, 연료비,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영농 운영비용을 공급 업자를 통해 현물 지원, 영농컨설팅 지원(농촌진흥청 연계 추진)

- 선정기준:

- 1) 영농실습지원: 북한이탈주민 중 영농 희망자

- 2) 창업 농가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영농지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영농활동 중인 북한이탈주민 중 독립 자영농으로 성장 가능한 자

- 지원 대상

- 1) 영농 취업지원: 영농을 처음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2) 영농 실습지원: 영농을 처음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3) 기 창업 농가 운영자금 지원: 만 6개월 이상 영농종사자

- 4) 선도농가 시설자금 지원: 만 30개월 이상 영농종사자 중 농업소득 산출 농가

- 의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23호]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수행 사업 중 하나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남북하나재단(<https://www.koreahana.or.kr>)은 2018년 영농·창업지원사업 컨설턴트를 모집한 전례가 있으며, 2019년 지자체와 연계하여 강원권에서 영농교육 실시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농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4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 목적: 취업지원센터 운영, 취업 역량 강화, 영농정착지원, 창업 지원 등을 통한 북한 이탈주민 자립자활 도모

- 지원내용

- 1)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 2) (취업 역량 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3) 취업 바우처: 외국어, 컴퓨터 등의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4)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북한이탈주민 고용 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 5) 영농정착지원(창업 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창업한 북한이탈주민
 - 영농실습지원 사업: 실습 농가는 숙식제공 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 영농종사자 지원 사업: 영농종사 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전과자, 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 6) (창업 지원)
 - 영농창업 자금 조성(햇빛 플러스)
 - 기 창업자 지원
- 7)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 8) (취업 역량 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 9)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최대 5천만 원의 재정 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수시)
- 10)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 사업을 통해 현금 지원(실습자 월 80만 원,

실습 농가 40만 원, 최대 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 지원(최대 1천만 원, 1회) 및 컨설팅 지원(수시)

- 11) (창업 지원) 창업 희망자에게 매칭펀드를 통한 현금 지원(월 최대 50만원, 3년), 기 창업자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

● 선정기준: 북한이탈주민

● 지원 대상:

- 1)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 2) (취업 역량 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4) (영농정착지원) 영농 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
- 5) (창업 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기 창업한 북한이탈주민

- 의견: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숙식제공이 가능하고,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실습농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5)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원

- 목적: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제공으로 한시적으로 생계안정 도모와 이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1) 주30시간 근무 시 주차, 월차 등 포함 115만원정도 수령(4대보험 지자체가입)
 - 2) 공동작업장 등 특별한 경우 주 35시간 근무의 경우도 있음. 임금 추가수령 가능
- 선정기준
 - 1) 소득인정액 및 재산액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2억 원 이하인자
- 지원 대상
 - 1)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등
 -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자 등 취약층
- 의견: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정부는 지원 및 관리하는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마을공방 등 공동작업장 육성 및 마을기업·지역기업 연계하고자 한다. 본 사업의 시행지침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농장은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6)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수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총 7만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1) 지역정착지원형: 연 2,4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와 직무교육(2년내)
 - 2)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임대료 등 창업 관련 비용과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2년내)
 - 3) 민간취업연계형: 공공·민간부문의 다양한 일 경험과 적정 임금(근무시간 비례), 각종 직무교육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1년내)
- 지원 대상: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사업기간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의견: 영농 창업을 목표로 하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고 하거나, 사회적 농장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해 이 사업으로 임금이나 창업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의 구체적인 기획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졌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부록 2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법”

Article 1 목적

1. 본 법은, 헌법 117조항 2항 m)에서 명시한 원칙과 지역 책임(Regional Responsibilities)에 따라, 국내 농촌 및 소외 지역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적절하고 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가경영체의 다기능 측면(Multi-functionality)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 고용 등을 반영하는 사회적 농업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함.

Article 2 정의

1. 본 법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농업은 본 조항 4항에서 정한 제한 사항 내에서 개인, 그룹, 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 및 범위는 1991년 11월 8일 제정된 법 n. 381에 따름)에 의해서 행해지는 농업인의 활동(Civil Code의 2135조항에서 언급)을 의미하며, 다음을 달성하려고 노력함.
 - a) 장애를 가진 근로자 및 소외 계층 근로자(2014년 6월 17일 제정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Regulation No. 651/2014 2조항 3)과 4)의 정의에 따름)의 사회적 고용, 소외 계층(1991년 11월 8일 개정된 법 n. 381의 4조항에서 언급함)과 미성년자에 대한 재할 프로젝트와 사회적 지원

- b) 기술 및 역량 개발, 사회적 통합, 노동 통합, 여가, 일상에서의 유용한 서비스를 목표로 유·무형 농업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c) 보건 및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 정신 또는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Emotional and Cognitive Stakeholders)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의료 치료, 정신 재활 등을 수반하거나 지원하는 활동과 서비스(동물사육과 식물재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
 - d) 지역 수준에서 인정받은 사회적 및 교육 농장에서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련한 환경 및 식품 교육, 지역 내 지식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행하는 프로젝트로 미취학 아동과 사회적·정신적·물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2. 농림식품부정책장관령은 본 법의 발효 후 60일 이내에 채택해야 하며,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Trento· Bolzano 자치 지방 간 관계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스탠딩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름. 관련 의회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 조항 1항에서 언급한 활동과 관련한 수단과 최소 요건을 정의함.
 3. 본 조항 1항의 b), c), d)호 에서 언급한 농업인의 활동은 Civil Code 2135항에 부합할 수 있는 연계 활동을 구성해야 함.
 4. 본 조항 1항에서 언급한 활동은 수익의 대부분을 농업 활동에서 창출하여 농업 관련 매출액이 30% 이상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본 법의 목적을 위해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을 사회적 농업 행위자로 간주함.
 5. 본 조항 1항에서 언급한 활동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2006년 3

월 24일에 제정한 법령 n. 155에 따름), 국가에 등록된 사회 진흥 단체(2000년 12월 7일 제정한 법 n. 383 에 따라 설립함), 개인(2000년 11월 8일 제정한 법 n. 328 1조 5항에서 언급함)이 수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율과 시설에 대한 사항은 현 법률에 따름.

6. 본 조항 1항에서 언급한 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규정은 보건 및 복지 서비스와 해당 지역 내 공공당국과 협력하여 설정함. 지역 내 담당 공공 기관들은 농업과 사회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기획하고, 사회적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체, 농업인, 지역 내 여러 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도모함.

Article 3 사회적 농업 경영체(Operator) 인정

1. 본 법안 2조 1항에서 언급한 편익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지역 네트워크는 사회적 농업 활동의 통합을 추구하며, 지역과 Trento·Bolzano 자치 지방에서는 자체적 능력으로 본 법의 발효 이후 6개월 이내에 필요 시 본 법안 2조 1항에서 언급한 서비스와 편익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사회적 농업 행위자를 인정 또는 승인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 승인한 사회적 농업 운영자를 알릴 수 있음. 지역과 Trento와 Bolzano 자치 지방은 최소 2년 이상 운영해온 사회적 농업 행위자들에게는 법안 발효 이후 임시 승인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1년 이내에 충족해야 함. 승인을 받으면 서비스와 활동들에 대한 점검·평가를 받으며 이는 본 법안 7조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름. 본 조항 1, 2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운영자 인정 혹은 승인은 공공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됨.

Article 4 생산자 단체 조항

1. 농업경영체 중 일부는 2005년 5월에 제정한 Legislative Decree n.102, 유럽 의회의 Regulation (EU) No. 1308/2013, 2013년 12월 27일 의회 결정 사항, 국내법 등에 따라 사회적 농업 생산품과 관련한 생산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Article 5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

1. 농업인이 본 법안 2조에서 제시한 활동을 위해 설계한 건축물은 농촌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면에서 도시 관련 조항들과도 부합해야 함.
2. 지역과 Trento와 Bolzano 자치 지방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사용할 건물의 경우 기존 건물의 복원 및 개량과 지역의 특정한 건축물 유형 및 특징, 환경 및 경관에 부합하도록 장려함.

Article 6 지원 및 개입

1. 공공 기관에서 관리하는 학교와 병원 식당은 2012년 8월 7일에 개정된 법 n. 135의 1조 1항 4번째 문장의 조항에 따라 (2012년 7월 6일에 제정한 법령 n. 95에서 개정함), 사회적 농업 행위자가 생산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
2. 사회적으로 생산한 재화를 공공장소에 적절하게 할당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 1998년 3월 31일에 개정된 Legislative Decree n.114의 법령 28조에서 의미하는 바에 따라 정의함.

3. 2012년 3월 24일에 개정된 법 n. 27(2012년 1월 24일에 제정한 Decree-Law n.1의 제66조에서 개정함)에서 언급한 농업 공공 토지와 지방정부 및 비영토(non-territorial)에 속하는 토지의 양도와 임대 시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설립을 위한 활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반 마피아법과 2011년 9월 6일에 제정한 Legislative Decree n.159에서 언급하는 예방조치에 따라 몰수한 물품과 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4. 반 마피아법의 48조 3항 c)와 Legislative Decree n.159에서 언급하는 예방조치에 따라 1986년 7월 8일에 제정한 법 no. 349의 문구에 “~, 사회적 농업 행위자 또한 인정받음.”을 추가함.
5. Special Decree에 따라 경제금융장관은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Trento· Bolzano 자치 지방 간 관계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스탠딩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 농림식품정책장관, 고용사회정책장관과 협의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가용 자원과 공공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본 법안 2조에서 제시한 활동에 대한 필요 요건과 추가 혜택 및 지원 수단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
6. 지역에서 농촌개발 계획을 기획할 때 다기능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 활동을 공간 및 사회 개발에 통합하는 데 기반을 두는 사업 구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적 농업 사업 시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장려함.

Article 7 사회적 농업 관찰국 설립

1. 농림식품정책부와 정부에서 설립한 사회적 농업 관찰국(Social Farming Observatory)은(이후 이를 “센터(Centre)”라고 부름) 다음의 임무를 담당함.
 - a) 사회적 농업 분야의 공공기관 활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영체 인정을

위한 균일한 표준, 사회적 농업 활동 점검·평가, 행정 절차 간소화, 기술적 지원 수단 마련, 경영체 교육 및 지원, 승인 교육 과정의 정의, 효과적인 모델 정의, 경영체와 공공 행정 간의 표준 계약 개발을 정의함.

- b)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국내 사회적 농업 활동의 현황과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점검하고 가공함.
 - c) 사회적 농업 활동의 효과성과 지역(Local) 서비스 네트워크로의 편입과 관련한 연구의 수집과 합동 평가
 - d) 통합 정책(Cohesion Policy)과 농촌개발 정책에서 농업의 사회적 통합을 조직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
 - e) 지역(Region) 및 지방(Local) 당국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 수단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제안
2. 관찰국은 지역과 Trento·Bolzano 자치 지방에서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설립한 유사 기관들과 각종 업무를 조율함.
3. 센터는 농림식품정책장관령에 따라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함.
- a) 5개 정부 부처(농림식품정책장관, 고용사회정책장관, 교육대학연구장관, 보건장관, 법무장관)에서 각각 지정한 5인의 대표자로 구성함.
 - b)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Trento·Bolzano 자치 지방 간 관계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상설 회의에서 임명한 지역과 Trento·Bolzano 자치 지방 소속의 5인의 대표자로 구성함.
 - c) 언급한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 차원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농업

전문 기관 소속의 2인의 대표자로 구성함.

- d) 언급한 네트워크에서 지정한 국가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소속의 2인의 대표자로 구성함.
 - e)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Trento·Bolzano 자치 지방 간 관계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상설 회의에서 임명한 국가 차원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제3섹터 소속의 2인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지역의 사회적 농업 분야에서 활동적인 경영자로 인정받은 경우
 - f) 2000년 12월 7일에 제정한 n. 383 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 등록을 한 농업 관련 사회진흥협회(social promotion associations)소속의 2인의 대표자로 구성함. 2000년에 제정한 법 n. 383의 11조에 따른 국가 협회 관측 센터(National Observatory of associations)에서 지정함.
 - g) 협동조합 운동(cooperative movement)의 보호 및 지원을 대표하는 국가차원의 협회에서 지정한 협동조합 소속의 2인의 대표자로 구성함.
4. 농림식품정책장관의 시행령은 본 법의 시행 이후 120일 이내에 채택되며,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Trento·Bolzano 자치 지방 간 관계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상설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과 센터 운영과 기관 유형의 정의에 따름. 현 법 체제 내에서 가용한 인력, 설비, 재정 자원이 신규로 투입되거나 공공 재정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됨. 관측 센터는 비용에 대해 보상금, 상품권(tokens), 보수, 세금 공제, 상환을 지정된 비용 범위 이상으로 올릴 수 없음.

본 법은 국가법으로 이탈리아 연방법의 공식적인 규범 법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모든 이들은 이를 관찰 및 시행할 의무가 있음.

2015년 8월 18일

Date in Palermo, addi 'August 18, 2015

MATTARELLA

Renzi, 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

Seen, the Orlando

참고문헌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18. 『2018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증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2018.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홍성군 장곡면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21-133. 한국농촌지도학회.
- 농림축산식품부. 2019.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보도자료 (2019년 3월 25일자).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2019.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20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 이승기. 2016. “개인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방안 고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7(1): 139-155. 사회복지법제학회.
- Bock, B. B. 2016. Rural Marginalisation and the Role of Social Innovation; A Turn Towards Nexogenous Development and Rural Reconnection. *Sociologia Ruralis*, 56(4): 552-573.
-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ers. 2011. *Empowering people, driving change: Social Innovation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 Di Iacovo, F. 2013. “Social Sustainability in Agriculture.” Proceedings of Congress Italian Society of Agricultural Economics, Lecce (Italy), September.
- Di Iacovo, F., Moruzzo, R., Rossignoli, C., and Scarpellini, P. 2014. Transition Management and Social Innovation in Rural Areas: Lessons from Social Farming.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20(3): 327-347.
- Di Iacovo, F. and O’Conner, D.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ISA.
- Durand, G. and van Huylenbroeck, G. 2003. Multi-functionality and rural devel-

- opment: a general framework. In G. van Huylenbroeck and G. Durand(eds.), *A New Paradigm for Europea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Burlington: Ashgate.
- Fazzi, L. 2011.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Farming in Italy. *Sociologia Ruralis*, 51(2): 119-136.
- Geels, F. W. 2005. *Technological transitions and system innovations: A co-evolutionary and socio-technological analysis*. MA: Edward Elgar.
- Geels, F. W. and Schot, J. W. 2007. Typology of sociotechnical transition pathways. *Research Policy*, 36: 399-417.
- Hassink, J. 2009. Social farming across Europe: overview. In F. Di Iacovo and D. O'Connor(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ISA.
- Hassink, J. 2017. *Understanding Care Farming as a swiftly developing sector in The Netherlands*. PhD. Thesis. Amsterdam Institute of Social Science Research, University of Amsterdam.
- Renting, H., Rossing, W. A. H., Groot, J. C. J., van der Ploeg, J. D., Laurent, C., Perraud, D., Stobbelaar, D. J. and van Ittersum, M. K. 2009. Exploring multifunctional agriculture: A review of conceptual approaches and prospects for an integrative transitional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90: s112-s123.
- Roep, D. and Wiskerke, J. S. C. 2004. Reflecting on Novelty Production and Nich Management in Agriculture. In J. S. C. Wiskerke and J. D. van der Ploeg(eds.), *Seeds of Transition: Essays on novelty production, niches and regimes in agriculture*. Assen: Royal Van Gorcum.
- Rotmans, J. and Loorbach, D. 2008. Transition management: reflexive steering of societal complexity through searching learning and experimenting. In J. van den Bergh and F. R. Bruinsma(eds.),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Theory and Practice*. Cheltenham, UK: Edward Elgar.
- Schot, J. 1998. The usefulness of evolutionary models for explaining innovation: The case of the Netherlands in the nineteenth century. *History and*

Technology, 14: 173-200.

Social Farming Ireland. 2018. *Social Farming and Intellectual Disability Services*.
Social Farming Ireland.

Van der Ploeg, J. D. 2018. *The New Peasantries: Rural Development in Times
of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Wilson, G. A. 2007. *Multifunctional Agriculture: A Transition Theory
Perspective*. Walling-ford, UK: CAB International.

충청남도정신건강복지센터(<http://www.chmhc.or.kr>).

연구보고 C2019-28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 방안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8.

발행인 | 김홍상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